

한국의료 홍콩 진출 가이드

2015. 11



목 차

I. 기본정보	1
1. 홍콩 개황	1
1-1. 일반	2
1) 거시환경 분석	3
2) 정치적 환경	4
3) 경제적 환경	9
4) 사회적 환경	18
1-2. 문화 및 관습	20
1-3. 우리나라와의 관계	26
2. 의료서비스 시장	28
2-1. 일반	28
2-2. 환자규모 현황	30
II. 세부정보	32
3. 보건의료 현황	32
3-1. 주요보건지표	32
3-2. 주요 질환	32
1) 주요 질병	32
2) 주요 사망원인	34
3-3. 의료비지출	37
1) 의료분야 예산	37
2) 의료비 지출 비중	38
3) 의료비용(의료수가)	38
4. 보건의료체계	42
4-1. 보건의료체계	42
1) 정부·공공의료서비스	43
2) 민간의료서비스	44
3) 기타의료서비스	44
4-2. 의료보험제도	45
4-3. 의료기관 현황	45

4-4. 의료인력 현황	46
5. 외국인 투자(관련 법)	47
5-1. 홍콩투자동향	47
1) 투자환경	47
2) 외국인투자 동향	49
5-2. 투자관련 기본 법령 및 정책	52
1) 외국인 투자관련 기본법령	52
2)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	55
5-3.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58
5-4. 관련 세제	63
5-5. 노무관리	64
1) 구인	64
2) 계약관리	64
3) 휴가제도	64
4) 종업원 복지보험	65
5) 급여기준	66
6) 해고절차와 조건	66
7) 퇴직금	67
8) 노조 활동 보장	67
5-6. 지적재산권	67
6. 의료기관(법인) 설립	69
7. 외국인 진료 및 허용범위	71
8. 홍콩 주요 민영병원	72

표 색인

표 1 홍콩 일반	2
표 2 주요 거시지표 요약	3
표 3 무역·물류·관광·비즈니스센터로 발전한 홍콩(1970~2013)	9
표 4 '06~'14년 홍콩 경제성장률	10
표 5 홍콩 경제지표	10
표 6 외채현황	11
표 7 홍콩의 해외직접투자(유출) 및 중국 비중	12
표 8 금년 상반기 對홍콩투자 외국기업 순위 (국가별)	13
표 9 대외거래	13
표 10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14
표 11 해외직접투자 진출액	14
표 12 CEPA 주요내용	15
표 13 중-홍콩 CEPA서비스 무역 개방 범위	16
표 14 월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18
표 15 홍콩정부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19
표 16 시기별 홍콩 기후	20
표 17 홍콩의 교육기관 수 및 학생 수(2006/7~2013/14)	22
표 18 한국-홍콩 수출입실적	26
표 19 한국-홍콩 해외투자 실적	27
표 20 홍콩-한국 투자실적	27
표 21 홍콩의 의료산업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이	28
표 22 2014년 홍콩 병원관리국 산하 의료기구 외래진료 및 응급진료 연환자수	30
표 23 2014년 홍콩 위생서 산하 의료기구 외래진료 및 응급진료 연환자수	31
표 24 홍콩과 OECD 주요국 2013년 보건의료지표	32
표 25 2013년 홍콩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연환자수	32
표 26 주요사망원인 및 사망자 수 (2010-2014)	34
표 27 2014년 성별별 주요사망원인 및 비중	35
표 28 2014년 연령별 주요사망원인 및 비중	36
표 29 2015-2016년 홍콩정부 의료재정예산	37
표 30 병원 관리국 산하 의료기관 수가기준-1	38
표 31 병원 관리국 산하 의료기관 수가기준-2	39
표 32 병원 관리국 산하 의료기관 수가기준-3	40
표 33 홍콩 의료기관 현황(2014년 말)	45
표 34 홍콩 의료인력현황(2014년 말)	46
표 35 홍콩투자청 제공 서비스 내역	56
표 36 홍콩 업종별 급여현황(2014년 9월 기준)	66
표 37 해고와 수당지급 기준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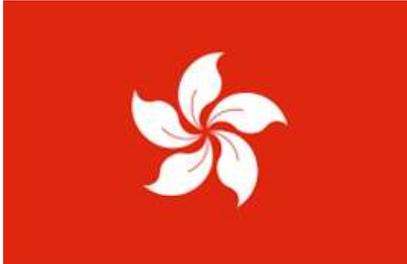
그림 색인

그림 1 홍콩 국기	1
그림 2 홍콩 문장	1
그림 3 홍콩 지도	1
그림 4 홍콩 정부 조직도	8
그림 5 홍콩의 주화	24
그림 6 홍콩의 의료시스템	42
그림 7 홍콩의 지리적 위치	47
그림 8 홍콩 기업현황-1	49
그림 9 홍콩 기업현황-2	50
그림 10 홍콩 기업현황-3	51

I. 기본정보

1. 홍콩 개황

그림 1 홍콩 국기



□ 홍콩 국기

- 명칭: 자형화홍기(紫荊花紅旗)
- 유래: 1990년 4월 4일에 채택되어 1996년 8월 10일 홍콩 특별 행정구 준비 위원회에 의해 공식 제정
- 의미: 빨간색과 하얀색은 일국양제를 의미하며, 바우히니아는 홍콩을 상징하는 꽃

그림 2 홍콩 문장



□ 홍콩 문장

- 홍콩의 기를 바탕으로 한 원 모양의 디자인으로 문장 바깥쪽으로 나온 하얀색 고리 위쪽에는 홍콩의 공식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가 중국어 정체자로 쓰여져 있으며 고리 아래쪽에는 "홍콩"("HONG KONG")이 영어로 쓰여져 있음

그림 3 홍콩 지도



1-1. 일반

표 1 홍콩 일반

구 분	주요 내용 ¹⁾
국 명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政府;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면 적	1,104 km ² (서울의 1.8배, 한반도의 1/200)
기 후	아열대 몬순형 기후
수 도	홍콩은 도시국가로 특정 수도가 없음
인 구	723만명
민 족	한족(95% 이상)
언 어	중국어(공용어: 광둥어, 상용어: 보통어, 통용어: 영어)
종 교	도교, 불교(35.5%), 기독교(6.8%), 천주교(5%), 이슬람교(3.1%), 힌두교(0.5%), 소수 종교(1%), 무교(48%)
독립일	1997년 7월 1일 홍콩특별행정구 성립일 * 영·중 공동선언('84.12월)에 의거 홍콩 주권 중국으로 이양
정부형태	행정수반 책임제(중국과는 1국 2체제의 자치정부)
국가 원수 (실권자)	중국 주석: Xi Jinping 행정 수반: Leung Chun Ying , 2012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1)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www.globalwindow.org, 2015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2015

1) 거시환경 분석

표 2 주요 거시지표 요약

거시환경	구분	2011	2012	2013	2014
정치적 환경	행정 수반	Donald Tsang (曾蔭權)	Leung Chun-ying (梁振英)		
	부패 지수 ²⁾	12위	14위	15위	17위
	WEF 국가 경쟁력 ³⁾ 지수	11위	9위	7위	7위
경제적 환경	총 GDP ⁴⁾	2,485억 달러	2,626억 달러	2,757억 달러	2,908억 달러
	1인당 GDP ⁵⁾	34,940 달러	36,588 달러	38,181 달러	40,032 달러
	GDP 성장률 ⁶⁾	5%	2%	3%	3%
	실업률 ⁷⁾	3.40%	3.29%	3.37%	3.23%
	경제자유도 순위 ⁸⁾	1위	1위	1위	1위
사회적 환경	인구 ⁹⁾	707만명	715만명	718만명	724만명
	평균 수명 ¹⁰⁾	83세	83세	84세	·
	사망원인 1위 ¹¹⁾	악성종양(암)			
기술적 환경	인터넷 사용자수 (100명당) ¹²⁾	72	73	74	75
	모바일 사용자수 (100명당) ¹³⁾	216	229	237	239

2)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 www.transparency.org

3) WEF (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 경쟁력은 인당 GDP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국가 능력과 중기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지해주는 정부 제도를 평가. 평가대상국은 총 148국이며 각 분야의 전문가 설문자료를 통하여 평가

4) IMF 홈페이지 www.imf.org

5) IMF 홈페이지 www.imf.org

6) The World Bank 홈페이지 www.worldbank.org

7) IMF 홈페이지 www.imf.org

8) 경제자유도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는 헤리티지재단이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수치화한 지수로 창업과 기업활동 자유도, 세금, 투자활동 자유도, 금융투명성 등 10개 항목을 종합평가하여 산출. 평가대상국은 178개국

9) The World Bank 홈페이지 www.worldbank.org

10) The World Bank 홈페이지 www.worldbank.org

11) 홍콩 위생서 홈페이지 <http://www.dh.gov.hk/>

12) The World Bank 홈페이지 www.worldbank.org

13) The World Bank 홈페이지 www.worldbank.org

2) 정치적 환경 14)

□ 정치 체계

- 홍콩은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로서 중국과는 독립된 조직을 가지고 있음
-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 영토의 일부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며, 1997년부터 50년 간 지속하도록 되어 있음
- 토지와 자원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그 운영권을 보유하며 기본법 해석 등에 관련된 중요 결정사항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 승인을 받음
- 홍콩 정치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행정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회의와 주요정부기구, 입법기능을 가진 입법회, 그리고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 사법기구로 이루어져 있음

□ 행정부

- 행정부의 대표는 행정수반(行政長官, Chief Executive) 즉, 홍콩특별행정구의 최고 책임자로 임기는 5년이며, 1차 연임이 가능함
- 선거인단(1,200명으로 구성)을 통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며, 선출 후 중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임명됨
 - 초대 특구행정수반은 400인 추천위원회(Selection Committee)에서, 제2,3대 행정수반 선거는 800인 선거위원회(Election Committee)에서, 제4대 행정수반은 1,200인 선거위원회(Election Committee)에서 선출(홍콩 기본법 제 1부속서)
 - 선거인단 구성(임기 5년): 공상·금융계(300인), 전문직(300인), 노동·사회·종교계(300인), 입법회·구의회·전인대·정협 등(300인)
 - 행정수반 후보자는 150명 이상 선거인단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 가능 (매 선거인단은 행정수반 후보 1명에 대해서만 추천 가능)

14)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hkg.mofa.go.kr/korean/as/hkg/main/index.jsp>

○ 역대 행정수반 명단

	행정수반	취임 일자	퇴임 일자	비고
1대	통치화 (Tung Chee Hwa, 董建華)	1997.07.01	2002.06.30	
2대	통치화 (Tung Chee Hwa, 董建華)	2002.07.01	2005.03.12	임기만료 전, 사임
	도널드 창 (Donald Tsang, 曾蔭權)	2005.03.13	2005.05.24	행정수반 서리
	헨리 탕 (Henry Tang, 唐英年)	2005.05.25	2005.06.24	행정수반 서리
	도널드 창 (Donald Tsang, 曾蔭權)	2005.06.25	2007.06.30	보궐선거에서 당선
3대	도널드 창 (Donald Tsang, 曾蔭權)	2007.07.01	2012.6.30	
4대 (현재)	렝춘잉 (Leung Chun-ying, 梁振英)	2012.07.01	-	임기만료일 : 2017.6.30

○ 주요 권한과 기능

- 정부정책 결정 및 행정명령 발표
-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 주요 관리(各司 司長, 各局 국장, 염정공서장, 심계서장, 경무처장, 이민사무처장 및 관세청장)의 任免, 법관 任免, 일반 공직자의 임명 및 해임
- 입법회에 대하여 세입, 세출 관련 동의안 제출, 법률안 거부권 행사
- 형사범 사면 또는 감형

○ 행정기관

- 재무사[政務司], 재정사[財政司], 율정사[律政司](각 사장[司長]은 부총리급) 산하에 12개의 정책수행과 관련된 국(局, policy bureau)과 61개 부서로 구성

□ 입법부

- 입법부의 주석은 재스퍼 창(Jasper Tsang Yok-sing, 曾鈺成)으로 총 의석수는 70석, 임기 4년(지역 직선 35명, 직능 간선 30명, 직능 직선 5명)임
 - 지역 직선(Geographical Constituency, 地域直選) : 총 35석
 - 홍콩 선거사무소에 등록된 유권자에 의한 보통선거 방식으로 선출
 - 총 5개의 지역선거구(地方選區)가 있으며, 각 구역마다 5-9개 의석 배정
 - 직능별 간선(Functional Constituency, 功能界別) : 총 35석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의 대표 등을 통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
 - 보험, 교육, 상업, 금융, 법률, 회계, 의료, 등 29개 직능분야에서 35석 선출
- 지방의회는 18개(香港島 4, 九龍 5, 新界 9) 區의회로 구성되며, 의원수는 총 541명(직접선거 선출의원 412명, 委任의원 102명, 當然의원 27명)으로 임기는 4년임

○ 주요 권한 및 상설위원회

- 법률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 및 동의
- 중앙정부에 행정수반 탄핵 건의(재적의원 2/3 찬성 필요)
-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사법/법률위원회, 공상위원회, 교육위원회, 환경위원회, 재정위원회, 주택위원회, 보안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등 설치, 운영

○ 정당별 의석(의원 임기 : 2012.10.1.~2016.9.30)

- 民建聯 13, 工聯會 6, 民主黨 6, 公民黨 6, 自由黨 5, 工黨 4, 人民力量 3, 新民黨 2, 社民連 1, 民協 1, 街工 1, 新民主同盟 1, 기타 21명

□ 사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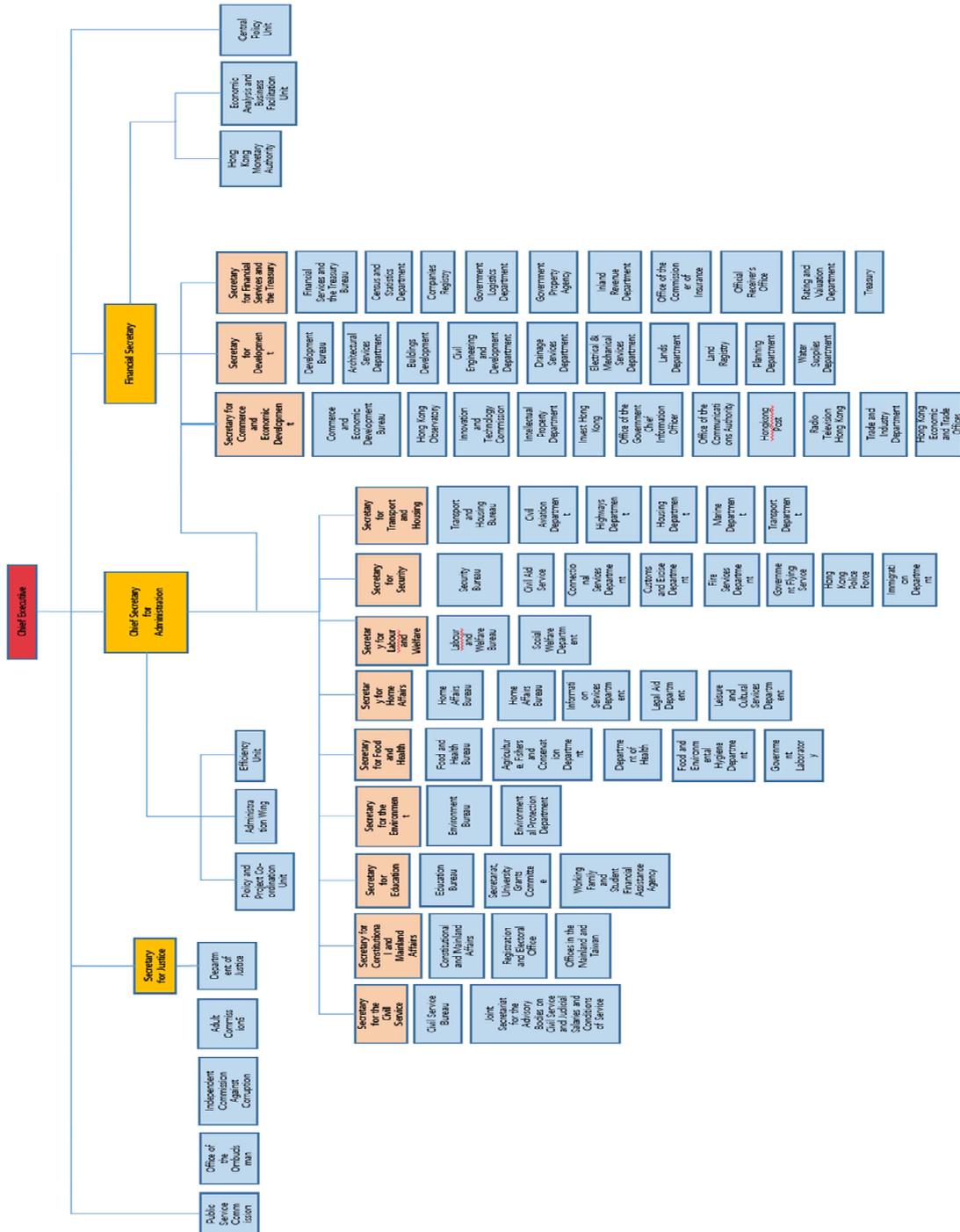
- 기본적으로 홍콩특구법원은 최종심을 포함한 독립된 사법권을 향유함
 - 국방·외교 등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권 부재
 - 중앙정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외국과의 사법공조협정 체결 가능

○ 법원의 종류

- 중심법원(終審法院, Court of Final Appeal)
 - 최종심을 담당하는 최고법원
- 고등법원(高等法院, High Court)
 - 고등법원은 상소법원(Court of Appeal of the High Court)과 원소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of the High Court)으로 구성
- 지방법원(區域法院, District Court)
 - 소액 민사소송 및 중요 형사범죄를 배심원 없이 재판
- 재판법원(裁判法院, Magistrate's Court)
 - 형사상 경범죄 약식 재판
- 특수법원 및 법정(專責法庭/審裁處, Specialized Courts and Tribunals)
 - 검시법원(死因裁判法庭, Coroner's Court)
 - : 자연사 이외의 사인을 심판
 - 소년법원(少年法庭, Juvenile Court)
 - : 7세-16세의 아동·청소년 범죄를 심판(지방법원내 설치)
 - 토지법정(土地審裁處, Lands Tribunal)
 - : 토지·부동산관련 민사 및 행정소송 심판
 - 노동법정(勞資審裁處, Labour Tribunal)
 - : 노사분쟁 조정, 심판
 - 소액청구법정(少額錢債審裁處, Small Claims Tribunal)
 - : 50,000 홍콩불 이하의 소액 금전분쟁을 비공식 심판
 - 음란물품법정(淫褻物品審裁處, Obscene Articles Tribunal)
 - : 특정 상품이나 전시품의 음란성 여부 심판

□ 정부 조직도

그림 4 홍콩 정부 조직도



3) 경제적 환경

화폐단위	Hong Kong Dollar (HK\$)
회계연도	4. 1. ~ 3. 31.
산업구조	('13) 서비스업 93%, 제조업 7%
주요수출품	('13) 전자기계 및 설비, 섬유 및 의류, 신발, 시계, 보석
주요수입품	('13) 원자재, 반도체, 자본재, 소비재
주요 부존자원	장석

출처: 2015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2015

□ 홍콩 경제의 주요 특징¹⁵⁾

- 홍콩경제는 서비스 부문이 GDP중 93%로서 80년대를 기점으로 서비스 주도형 경제(service oriented economy)로 탈바꿈
 -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홍콩 제조업의 중국본토 이전이 본격화
 - 중국본토 경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역·물류·금융·전문직 서비스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특화
- 홍콩은 중국 등 아시아와 서구를 이어주는 HUB 전략 추진
 - 홍콩은 서구 등 해외자본 → 중국 및 아시아에 투자하는 전초기지이면서, 최근에는 중국자본 → 해외투자 발판으로 발전
 - 글로벌 기업·금융회사 아시아 지역본부가 홍콩에 Clustering

표 3 무역·물류·관광·비즈니스센터로 발전한 홍콩(1970~2013)

	1970	1980	1990	2000	2013
중개무역 비중 (%)	19.1	30.7	64.7	88.5	98.5
컨테이너물동량 (만TEU)	⁽¹⁹⁷³⁾ 47	147	510	1,810	2,229
항공기 이착륙 (편)	46,749	54,589	105,782	181,900	372,000
홍콩 방문객 (만명)	93	230	590	1,306	5,430
아시아지역본부 수 (개)	-	-	572	855	1,379

15)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hkg.mofa.go.kr/korean/as/hkg/main/index.jsp>

○ 경제성장률

- 홍콩 경제성장률은 2010년 약 7%에 이어 2011년에도 5%로 강세를 유지하였으나 국제 경기 악화로 인해 성장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2013년에도 대외적 영향의 지속으로 지난 10년간 홍콩경제의 연평균 성장률(4.5%)보다 낮은 3.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성과를 보임
- 홍콩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2.4%, 2분기 경제성장률은 2.8%로 상반기 평균경제성장률이 2.6%를 유지하는 중이며,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표 4 '06~'14년 홍콩 경제성장률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7.0	6.5	2.1	-2.5	6.8	4.8	1.7	3.1	2.5

출처: The World Bank 홈페이지 www.worldbank.org

○ 물가

- 2010년 경기회복과 함께 물가는 매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은 2012년, 2013년, 2014년 각각 4.1%, 4.3%, 3.9%를 기록함
- 2015년 1월 1일부터 전기료와 주차료, 테마파크 입장료 등이 모두 동반 상승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2015년 물가인상률이 전년도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5 홍콩 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GDP	억 달러	2,485	2,626	2,740	2,927
1인당 GDP	달러	34,941	36,589	37,955	40,304
경제성장률	%	4.8	1.7	3.1	2.5
인플레이션	%	5.28	4.073	4.329	4.424
종합주가지수	P	19,482.65	20,104.3	23,306	24,507
실업률	%	3.40	3.29	3.37	3.23
재정수지/GDP	%	3.9	3.2	0.8	2.6
소비자물가상승률	%	5.3	4.1	4.3	3.9

출처: 2015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2015

표 6 외채현황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98,192	134,739	134,739	134,739
단기외채	백만 달러	10,889	14,476	14,090	14,090
총외채잔액/GDP	%	39.5	51.3	49.2	45.9
외채상환액/총수출	%	5.8	7.0	9.1	8.1

출처: 2015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2015

□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모습

○ 중국 및 아시아에 대한 자금조달(financing) 채널

- 2014년 5월말 현재 총202개 은행이 홍콩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계 100대 은행 중 70개 은행이 홍콩에 진출 중
- 그 결과, 홍콩에 소재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홍콩 플랫폼을 이용하여 지점 설치 등을 통해 활발히 對중국 파이낸싱을 진행
- 전 세계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홍콩에 법인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 중국 및 아시아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홍콩 및 글로벌 기업의 대 중국 operation확대 → 파이낸싱 수요로 이어지면서 홍콩의 입지가 한층 강화

○ 홍콩은 세계 최고의 역외 위안화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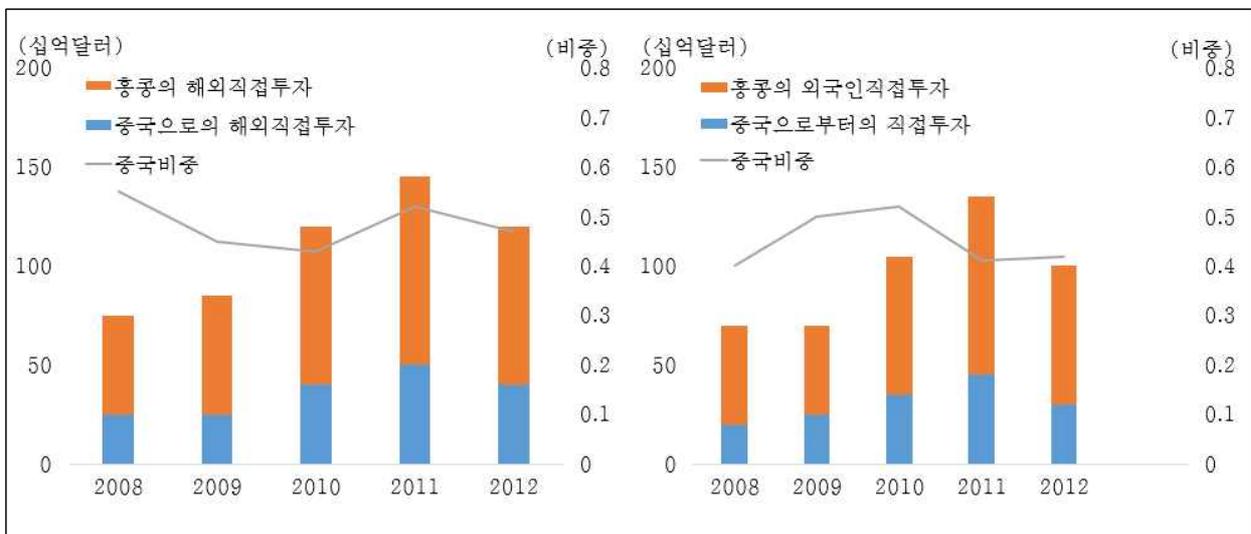
- 홍콩은 전 세계 기업과 금융기관에게 위안화 무역결제, 지급결제, 파이낸싱 및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기능
- 홍콩 은행들은 위안화로 표시된 다양하고 정교한 금융서비스를 개발·제공
- 2014년 4월 현재 홍콩 내 위안화 유동성(예금 및 CD)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가장 큰 역외 위안화 유동성을 제공
- 홍콩은 최대 규모의 위안화 표시 무역결제센터로 부상(2013년 1월~10월 중 홍콩 소재 은행을 통한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전체의 82.7% 수준)
- 홍콩 위안화 역외시장은 다음과 같은 선순환 구조(virtuous circle) 확립

- ① 2009년부터 시작된 위안화 무역결제를 통해 홍콩에 위안화 유동성이 유입되고 충분한 유동성 풀이 축적됨
 - ② 이를 기반으로 위안화 자금조달 및 대출 등이 활성화되면서 선물 등 헤지상품의 등장과 같은 다양한 위안화 금융서비스도 제공
 - ③ 이와 같은 투자채널은 다시 기업들로 하여금 위안화 무역결제와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가 완성
- ※ 즉 중국과의 위안화 무역결제를 통해 홍콩 내 위안화 유동성 Pool이 축적되면서, 외환시장, 자본시장 및 머니마켓 등이 형성되고 이는 다시 위안화 무역결제를 원활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

○ 해외직접투자(FDI) 채널 : 홍콩 → 중국, 중국 → 홍콩

- (홍콩 → 중국) 홍콩은 홍콩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의 대중국투자의 관문(gateway)인 바,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중국 → 홍콩) 홍콩은 중국기업들의 해외진출 발판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이 홍콩을 거쳐 진행

표 7 홍콩의 해외직접투자(유출) 및 중국 비중



출처: 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 외국인 투자유치

- 홍콩투자청(InvestHK)은 금년 상반기 중 중국 본토 및 해외를 포함한 총 32개국 260개 기업이 홍콩투자청을 통해 홍콩에 신규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였다고 발표함¹⁶⁾
- 이는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한 수치이며, 260개 기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기업이 총 52개로 20%를 차지했고, 다음이 미국(13.8%), 영국(10%), 일본(7.69%) 및 프랑스(6.14%) 順

표 8 금년 상반기 對홍콩투자 외국기업 순위 (국가별)

순위	지역	수량(개)
1	중국 본토	52
2	미국	36
3	영국	26
4	일본	20
5	프랑스	16

표 9 대외거래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환율(달러당, 연중)	HK\$	7.8	7.8	7.8	7.8
경상수지	백만 달러	13,812	4,145	5,095	2,538
경상수지/GDP	%	5.6	1.6	1.9	0.9
상품수지	백만 달러	-7,477	-18,917	-26,212	-29,387
수출	"	437,663	468,381	508,671	529,211
수입	"	445,140	487,298	534,884	558,598
서비스수지	"	17,045	21,886	28,541	27,214
외환보유액	"	285,302	317,225	311,105	312,145

16) 홍콩투자청 홈페이지 <http://www.investhk.gov.hk/>

- 2013년 말 홍콩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 누계액은 10조4,829억 홍콩달러로서 2013년 GDP의 492% 수준 ⇒ 중국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1.9%

표 10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단위: 10억 HK\$)

구 분	flow			stock (2013년 말)
	2009년	2011년	2013년	
계	430.5	751.8	576.2	10,482.9
버진 아일랜드	122.3	151.5	341.9	3,537.0
중국 본토	214.8	318.1	46.6	3,341.6
네델란드	45.6	59.6	16.1	696.6
버뮤다	53.8	40.3	45.7	613.8
미국	-4.1	21.9	21.2	347.5
케이만 아일랜드	10.5	20.0	34.4	262.6
싱가폴	7.0	82.6	14.0	225.9
일본	12.8	5.0	6.3	205.8
영국	0.7	1.6	23.1	159.6
룩 아일랜드	0.1	6.3	15.6	119.1
기타	-33.0	45.0	11.4	973.4

출처: 홍콩 조사통계국

- 2013년 말 홍콩기업의 해외투자 진출 누계액은 9조6,197억 홍콩달러로서 홍콩 GDP의 451% 수준 ⇒ 對중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1.1%

표 11 해외직접투자 진출액

(단위: 10억 HK\$)

구 분	flow			stock (2013년 말)
	2009년	2011년	2013년	
계	458.9	749.9	626.5	9,619.7
중국 본토	201.8	393.1	396.9	3,952.3
버진아일랜드	216.9	245.4	155.9	3,766.0
버뮤다	24.6	29.2	22.4	254.6
케이만아일랜드	19.2	46.8	19.5	233.2
영국	-11.5	13.1	1.7	232.0
호주	11.1	8.8	9.2	113.5
룩셈부르크	-0.9	4.9	0.2	85.7
싱가포르	4.4	4.0	-2.2	80.2
캐나다	-5.5	-0.5	-0.9	73.0
미국	-5.9	-13.7	5.6	69.5
기타	4.8	18.9	18.2	759.7

출처: 홍콩 조사통계국

□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¹⁷⁾

- CEPA는 중국-홍콩 간 FTA격인 협정으로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의 약자
- 이 협약은 중국-홍콩 간 교역 시 무관세 혜택, 서비스 시장 우선 개방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으며, 2003년 처음 체결한 이후 매년 보충 협정을 체결했으며, 2012년 6월 29일, 9차 보충 협의가 체결 됨
- 2014.01.01. 발효
 - CEPA는 내용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이나 형식적으로 CEPA 명칭 사용
 - CEPA 명칭 사용 이유는 홍콩, 마카오는 중국과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과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을 모두 통합한 경제공동체 설립에 있어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으로 사용
- 홍콩(마카오)와 CEPA 체결은 침체된 홍콩(마카오) 경제 진작 및 중화권 경제 공동체 설립 일환

표 12 CEPA 주요내용

	홍콩, 마카오 공통	차이점	
		홍콩	마카오
관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특별 행정구가 원산지인 273개 품목에 대해 2004년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기타 품목에 대해서 2006.01.01 무관세 적용 	금속 제품	식음료 약기
서비스 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특별행정구 기업에 한해서 서비스 시장 개방 • 공통: 법률, 회계, 건축(설계), 의료, 음향 및 영상, 부동산, 건설 및 관련 서비스, 광고, 컨설팅, 컨벤션/전시, 유통, 보험, 은행, 증권, 관광, 운수, 물류 등 	물류 포워딩, 창고	통신 부가 서비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및 투자촉진, 통관 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중소기업간 협력, 법률, 법규의 투명성 제고, 검역 및 위생 강화 	중의학 협력	산업 협력
중국 시장 개방	2006년 대부분 서비스 업 개방		

17) 2014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중국 프리미엄 헬스케어 센터 건립, 대전선병원 사례 발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 홍콩 - 중국 간 CEPA 체결에 따른 홍콩법인 혜택

- 중국 내 외국투자자의 배당 소득세율
 - CEPA 이전: 홍콩거주인 20%, 홍콩법인 10%
 - CEPA 이후: 개인 10%, 홍콩법인 10%
- 이자소득 관련
 - CEPA 이전: 외국인 20% 외국법인 10%
 - CEPA 이후: 홍콩거주인 & 홍콩법인 7%
 - 관계회사의 자본금 이외의 대여금 투자시 혜택 가능
- 지주회사로서 홍콩법인 장점
 - 홍콩지주회사와 관련된 제한 규정 없음
- 기술사용료 관련(원천징수율)
 - CEPA 이전: 홍콩거주인 10%, 홍콩법인 20%
 - CEPA 이후: 공히 7%

○ 중-홍콩 CEPA서비스 분야 주요 내용

- 적용범위
 - 서비스 무역 개방은 기본적으로 WTO룰에 기초하고 있으나, 중-홍콩 CEPA는 중국 서비스업 일정보다 조기 개방-확대 개방 원칙
 - 서비스 무역 개방 범위는 향후 양측 협상결과에 따라 신규 개방 또는 기개방 업종의 범위확대 등 형식으로 추가가능

표 13 중-홍콩 CEPA서비스 무역 개방 범위

회계	화물대리	인쇄서비스
광고	정보기술서비스	전문인력자격고시
항공운수서비스	개체공상호(자영업)	공공사업서비스
시청각	보험	증권

- CEPA와 WTO 양허안 비교 (의료서비스)

WTO 양허안	CEPA에 따른 홍콩 중국시장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측 다수지분(70%) 합자병원, 진료소 허용, 합자병원 투자총액 2천만위엔 이상, 합자기한 20년 이하 중국 측 필요에 따라 수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 1월부터 중국 내 합자 의료기관 투자총액 요구를 2천만 위엔에서 1천만 위엔으로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자병원 또는 진료소가 고용하는 의료진 대다수는 중국 국적 보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자병원, 진료소가 고용하는 의료진의 대부분은 홍콩 영주권자로 구성가능 홍콩내 의료 자격 보유자이며, 진료경험 5년이상인 홍콩영주권자는 중국 의료업자격 취득 후 중국 내 진료소 개설 허용 중국 의사자격증 취득 홍콩 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진료소개설에 대해 중국인과 동일한 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부 발급 외국인의사 단기 의료허가증 기한은 최장 6개월(만기 후 1년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콩 의료자격 보유자의 중국 내 단기 의료허가 최장 기한은 3년 (기한 만료 후 연장이 필요 할 경우 다시 단기의료허가 신청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콩 의료자격을 보유한 홍콩영주권자의 중국자격고시 응시 허용

4) 사회적 환경

□ 고령화

- 1990년대 중반부터 홍콩의 고령화와 함께, 사회 안전망 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자, 2000년부터 의무적립기금(MPF : Mandatory Providence Fund) 제도를 도입 · 운영 중

홍콩의 의무적립기금 제도

- 가입대상: 18세부터 60세까지 60일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
 - 월 소득액 7,100~30,000HK\$의 근로자(2014.6월 기준)
 - 납입자 및 납입액: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소득의 5%, 자영업자는 5%를 납입
 - 펀드 운용 결과에 따라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
 - 감독기관: 의무적립기금관리국(MPFSA :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uthority)
 - 운용자: MPFSA에서 승인한 19개의 금융기관(수탁자)
 - 연도별로 금융시장의 환경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
 - MPFSA는 가입자 보호를 위한 수탁자의 투자 가이드라인 등 감독기능 강화
- ※ 홍콩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 : 60세
 ※ 홍콩 공무원과 교원은 법적으로 연금 혜택 보장 (MPF 예외 대상임)

- 홍콩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 연금제도 시행 중
 - 현재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매월 HKD \$1,180의 노령연금(Old Age Allowance)을 지급
 - 월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에 부합하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는 기존 노령연금의 2배에 해당하는 HKD \$2,285의 노령생활연금(Old Age Living Allowance) 지급

표 14 월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자산 보유 한도	월 소득 한도
단신 노령자	HKD \$210,000	HKD \$7,090
노인 부부	HKD \$318,000	HKD \$11,360

출처: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 사회복지 제도

- 홍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노동복지국(Labour and Welfare Bureau) 산하 사회복지서(Social Welfare Department)에서 담당
- 2014년 정부예산총액의 17.5%에 달하는 559억HK\$(약 72억US\$)를 예산으로 배정
- 홍콩정부의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음

표 15 홍콩정부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분류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회보장	포괄적 사회보장 지원(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
	공공복지수당(Social Security Allowance Scheme)
	자립고용지원 종합 프로그램(Integrated 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for Self-reliance)
가정 및 아동 복지	65개 가정 서비스 센터(Family Services Centers) 운영
	비정기 아동 보호 서비스 및 이웃지원 아동보호 사업(Occasional Child care Service and Neighbourhood Support Child Care Project)
노인 복지	노령생활연금(Old Age Living Allowance)
	노령연금(Old Age Allowance)
	지역사회 노인보호 서비스 바우처 시험계획(Pilot Scheme on Community Care Service Voucher for the Elderly)
장애인 복지	장애연금(Disability Allowance)
	장애근로자 지원 프로그램(Support Programmes for Employees with Disabilities)
	장애인 보호시설 인허가 제도(Licensing Scheme for Residential Care Ho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사고 보상	범죄 및 법집행 상해 보상제도(Criminal and Law Enforcement Injuries Compensation Scheme)
	교통사고 희생자 지원(Traffic Accident Victims Assistance Scheme)
기 타	긴급구제(Emergency Relief)
	지역사회보호기금(Community Care Fund)

1-2. 문화 및 관습¹⁸⁾

□ 기후

- 홍콩은 대부분 아열대 기후에 속하며 한국과 같이 4계절이 있음
- 짧은 겨울을 제외하고, 1년 중 절반 가까이는 온대기후 날씨를 보이며 여름에는 영상 31도를 넘는 날이 많고, 겨울에는 영상 10도까지 떨어짐
- 1년 강수량의 90퍼센트 정도는 4월과 9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음
- 홍콩의 태풍시즌은 보통 6월에 시작하여 9월에 끝남
 - 매년 최소 2~3개의 태풍이 홍콩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홍콩 기상대에서는 태풍경보가 발생 시 대중매체에 이를 통보함

표 16 시기별 홍콩 기후

시기	기후
3~5월	우기가 시작되는 따뜻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기온 18~27℃ • 4월부터는 급격히 기온이 상승하며, 습도가 높아져서 비 오는 날이 많음
6~9월	후끈 달아오르는 뜨거운 여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기온 26~33℃ • 본격적인 우기지만 열대성 스콜 기후이기 때문에 단발성 소나기를 자주 만날 수도 있음 • 기온도 최고조로 올라가므로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음
10~11월	맑고 선선한 날씨의 가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기온 18~28℃ • 9월 말부터 우기가 끝나므로 흐린 날이 줄고 대체로 우리나라의 초여름 날씨를 보임 • 밤에는 선선해서 산책을 즐기기에 좋고, 햇살이 강할 때는 해수욕을 즐겨도 좋음
12~2월	해가 일찍 지는 겨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기온 13~18℃ • 겨울이라 해도 좀처럼 기온이 10℃를 내려가는 일이 없음 • 한낮에는 반소매를 입어도 무난하지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두꺼운 재킷과 겨울 가디건은 필수

출처: 홍콩 요술램프, 홍콩관광청 한국지사, 2015

18) 홍콩관광청 www.discoverhongkong.com, 한국무역협회, KOTRA Global Window

□ 언어

- 홍콩 사람들의 90%이상은 중국의 소수방언인 광둥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영어(통용어), 북경어(상용어)를 사용함
 - 광둥어는 중국,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특히 말레이시아), 해외 화교 등 현재 약 1억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홍콩은 식민지 시대의 역사 및 국제적인 항구로 인해 영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음
 - 영어는 모든 공식표지판과 대중교통의 안내방송 뿐 아니라 식당의 메뉴까지 대부분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음
-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1980년대 말부터 중국 본토와의 왕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표준 중국어가 널리 보급되고 있음

□ 종교

- 홍콩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불교와 도교가 성행함
- 전체 비중은 불교(34%), 도교(34%), 기독교(4%), 천주교(3%), 회교(1%) 순
- 2010년 통계에 따르면 불교와 도교 사원이 600여개 정도 있으며, 이슬람 사원도 5개가 있음
-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지만, 50% 정도의 홍콩 사람은 무종교인에 해당함

□ 교육

- 홍콩 정부는 장기 사회간접자본 투자 중 최우선 순위를 교육에 두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
 - 6~17세 까지 12년간의 초중등 교육을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16.9만 명이 연중 취학 중
 - 2014 / 2015년간 정부의 교육예산은 754억 HK\$

○ 학교제도

- 초등학교 (Primary School) : 6년제
- 중등학교 (Secondary School) : 6년제 (중학과정 3년 + 고등과정 3년)
- 국제학교 (International School): 70개 (초,중,고등과정: 미·영·독·한국국제학교 등 / 영국계 국제학교는 13학년제 운영), 이 가운데 23개교는 중등학교 과정

표 17 홍콩의 교육기관 수 및 학생 수(2006/7~2013/14)

단위(학생 수): 천명

	2006/7		2010/11		2011/12		2013/14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유치원	1,015	140.8	985	150.5	980	159.0	969	169.8
초등학교	726	414.5	629	333.4	625	326.2	569	320.9
중등학교	669	510.3	685	486.8	658	487.0	514	395.3
대학교이상	12	218.4	13	303.8	15	296.8	17	350.5

출처: Hong Kong Yearbook 2013, Hong Kong Education Bureau

○ 대학 입시제도

- 홍콩의 대학입시는 중등과정(Secondary School) 6학년 졸업 시 치르는 홍콩 중등교육학위(HK Diploma of Secondary Education) 시험을 기반으로 함
 - 2009년 이전에는 영국식 13개 학년제(6-3-2-2)에 따라 11학년과 13학년 때 각각 동 학위 시험을 치렀었음
 - 2009년 교육제도 개혁에 따라, 12학년제(6-3-3)로 변경
- 홍콩의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후원으로,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
 - 홍콩중문대 사회학과 (홍콩 학생) HKD 20,000~30,000/학기, (국제 학생) HKD 50,000/학기

○ Local School (홍콩 공·사립학교)

- Local School은 그 주교육 대상이 홍콩 현지인의 자녀들이며 홍콩 현지어를 교육매체로 사용하는 학교가 다수
- 학비의 수준은 공립의 경우 거의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편이지만, 사립의

경우 학교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학비 책정

○ International School(국제 학교)

- 국제학교는 거의 모두가 사립으로 대부분 특정국가, Community 나 Group 에 속하는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학비는 현지 학교보다 높은 수준임
- Hong Kong International School, Chinese, French, German, Korean International School 등 20여개 재단에 속하는 학교들이 등록되어 있음
- 홍콩의 식민지 시절 영국인 등의 자녀교육기관으로 주요역할을 담당해온 ESF 계열학교도 그 교육대상의 다양화와 학비인상을 통하여 국제학교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국국제 학교(Korean International School : KIS)

- KIS는 1988년 홍콩거주 한인 동포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한국정부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아 한국어 과정과 영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조기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국내에서의 해외유학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고 갈 수 있음
- 자신의 영어수준에 따라 KIS의 한국어 학교나 영어학교에 바로 입학하여 영어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유학생화에 적응할 수 있음

□ 통화

- 홍콩의 공식통화는 홍콩달러(HKD)이며, 주화는 청동색의 10 ¢, 20 ¢, 50 ¢ 와 은색의 HK\$1, HK\$2, HK\$5, 청동과 은색이 결합된 HK\$10이 있음
- 지폐는 HK\$10를 제외, 3개의 은행(HSBC, Standard Chartered Bank, Bank of China)에서 HK\$20, HK\$50, HK\$100, HK\$500, HK\$1000를 발행
- HK\$10는 녹색 또는 자주색(정부 발행), HK\$20는 짙은 파란색 혹은 어두운 파란색, HK\$50는 보라색 또는 초록색, HK\$100는 빨간색, HK\$500는 갈색, HK\$1000는 노란색임

- 보통 1달러에 7.8HKD로 고정 환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됨

그림 5 홍콩의 주화



□ 공휴일

- 홍콩의 연간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

기간	휴무일
1월 1일	양력설
2월 19일	음력설
2월 20일	음력설 연휴
2월 21일	음력설 연휴
4월 3일	수난절
4월 4일	수난절 후 1일
4월 6일	청명절 후 1일
4월 7일	부활절 후 1일
5월 1일	노동절
5월 25일	석가탄신일
6월 20일	용선축제일
7월 1일	홍콩특별자치구 설립기념일
9월 28일	중추절
10월 1일	국경일
10월 21일	중양절
12월 25일	성탄절
12월 26일	성탄절 후 1일

□ 비즈니스 참고사항

○ 팁

- 홍콩은 감사의 표시로 약간의 팁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특히 호텔), 식당의 경우 5~10 홍콩달러, 택시는 짐이 있을 경우 10 홍콩달러 이하, 호텔은 짐 하나에 5 홍콩달러, 룸메이드는 10 홍콩달러, 룸서비스는 5~10 홍콩달러를 주는 것이 보통임
- 식당의 경우 10%의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교통

- 홍콩 지하철(MTR-Mass Transit Railway)은 11개 노선이 홍콩 주요지역을 연결하고 있음
- 여러 차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Octopus카드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임
- 버스의 경우 노선이나 구간에 따라 요금이 다르며 거스름돈을 주지 않으므로, 잔돈을 준비하거나 Octopus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 택시는 시내 곳곳에 설치된 승강장에서 탑승할 수 있으며, 노란실선이 두 줄인 도로일 경우에는 택시 및 일반 차량의 주정차가 불가능함
- 트렁크에 짐을 싣는 경우 짐 한 개당 5 홍콩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

1-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 현황

- 한국은 홍콩과 1949년 11월 홍콩 총영사관을 개설한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 2014년 한국의 대홍콩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272.6억 불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합성수지, 금은 및 백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기구부품, 컴퓨터, 플라스틱제품, 비누치약 및 화장품 임
- 2014년 한국의 대홍콩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한 17.5억 불
 -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동제품, 금은 및 합금, 어류, 무선통신기기, 수동부품, 합금철·선철 및 고철, 전자응용기기 등임
- 한국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홍콩의 위상(2014년 기준)
 - 수출 :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제 4위
 - 교역 : 중국, 미국, 일본, 사우디, 싱가포르, 대만, 호주, 베트남에 이어 9위
 - 무역수지 흑자 : 중국(553억 미불)에 이어 2위

표 18 한국-홍콩 수출입실적

단위: US\$ 백만불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출	18,655 (-1.7)	19,772 (6.0)	19,661 (-0.6)	25,294 (28.7)	30,968 (22.4)	32,606 (5.3)	27,756 (-14.9)	27,256 (-1.8)
수 입	2,142 (2.0)	2,223 (3.8)	1,487 (-33.1)	1,946 (30.9)	2,315 (19.0)	2,058 (-11.1)	1,929 (-6.3)	1,750 (-9.3)
총교역	20,797 (-1.3)	21,995 (5.8)	21,148 (-3.9)	27,240 (28.8)	33,283 (22.2)	34,664 (4.1)	29,685 (-14.4)	29,006 (-2.3)
수 지	16,513	17,549	18,174	23,348	28,653	30,548	25,827	25,507

출처: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 투자 현황

○ 한국의 홍콩 해외투자 실적

표 19 한국-홍콩 해외투자 실적

(단위 : 건, 백만불)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잠정)	누 계
신고건수	428	525	308	326	298	358	323	387	4,910
신규법인수	150	158	79	103	90	103	89	114	1,752
신고금액	1,976	3,478	1,771	1,516	1,710	2,068	1,034	1,083	19,693
투자금액	1,868	2,618	1,538	1,295	1,631	1,619	881	619	15,967

출처: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 주요 투자 업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임
-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대상국 중 홍콩은 미국(568억 미달러), 중국(489억 미달러)에 이어 제 3위 투자대상임

○ 홍콩의 한국투자(외국인투자) 실적

- 주요 유치업종은 도·소매(유통), 음식·숙박·제조업(전기·전자, 운송용 기기), 운수·창고(물류),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임
- 홍콩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독일, 싱가포르에 이어 제 7위
- 홍콩 내 한국기업 진출업체 : 1,700여개
- 홍콩 진출 한국계 금융기관은 총 26개사(2015년 4월 기준)
 - 은행(11개), 증권사(9개), 자산운용사(2개), 기타(4개)

표 20 홍콩-한국 투자실적

(단위 : 건, 백만불)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 계
신고건수	95	96	93	77	112	97	112	202	1,707
신고금액	132	242	773	93	572	1,670	976	1,061	7,908

출처: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 의료서비스 시장

2-1. 일반

□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 및 전망

- 사회·경제 발전이 가속화되고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홍콩 의료서비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2011-12¹⁹⁾년 홍콩의 전체 의료위생지출은 1,019만 홍콩달러로 GDP의 5.2%를 차지하였고 인당 의료위생지출이 14,422 홍콩달러임
 - 2013-14년 정부 공공지출 중 위생분야 지출은 676억 홍콩달러로 총 정부지출(4,573 홍콩달러)의 14.8%를 차지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 헬스케어 비용은 2020년까지 151% 성장 할 것이며, 그 중 홍콩은 200억 달러로 연평균 14.8%의 성장이 예상됨²⁰⁾

□ 의료서비스 산업 부가가치²¹⁾

- 2012년 홍콩 의료서비스 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7.5%증가한 294.6억 HK\$로 홍콩 GDP의 1.5%를 차지
 - 2012년 기준, 78,970명이 홍콩의 의료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민간병원, 간호·양로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표 21 홍콩의 의료산업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이

지표	2009	2010	2011	2012
부가가치 (억 HK\$)	239.1(9.5)	261.3(9.3)	274.0(4.9)	294.6(7.5)
종사자수(명)	72,740(4.0)	73,480(2.1)	76,300(2.1)	78,970(3.5)

출처: 홍콩 통계처,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19) 최신통계자료로 그 이후의 년도의 데이터는 발표되지 않음

20) Asia Pacific Healthcare Outlook 2012-2015, Frost&Sullivan, 2012

21) 홍콩의 서비스산업 추진전략 및 시사점,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2014.12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민간병원, 간호·양로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
 - 2000년대 이후에도 영아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높아지는 등 의료서비스 지속 개선

□ 의료관광 산업 현황

- 전 세계적으로 의료관광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홍콩은 비싼 임대료와 운영비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나 높은 의료기술과 서비스 수준을 무기로 아시아의 의료관광 거점으로 도약 모색
 - 비싼 땅값과 운영비로 태국이나 인도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나,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서비스 제공으로 프리미엄 고객 유치 가능
- 검진과 치료를 다른 곳에서 하는 의료관광 트렌드와 홍콩의 지리적 우위를 고려했을 때 홍콩의 경쟁력은 높이 평가받고 있음
- 중국 본토인들의 의료 수요는 홍콩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기반이 됨
 - 2010년 기준 홍콩에서 태어난 신생아 8만 8,495명 가운데 약 46%가 중국 본토 여성이 홍콩에 와서 출산한 아이임²²⁾
 - 이러한 원정 출산은 시민권 획득 및 세제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홍콩 정부가 쿼터제를 도입할 정도로 홍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22) 글로벌 윈도우 홈페이지 <http://www.globalwindow.org/>

2-2. 환자규모 현황

- 2014년 홍콩 병원관리국 산하 의료기구별 연환자수는 전문의료기관 외래진료 연환자수가 714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의료기관 외래진료 연환자수가 589만 명으로 많음
- 전문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연환자수는 내과가 194만 명으로 가장 많고, 2위는 안과(104만명)가 차지함

표 22 2014년 홍콩 병원관리국 산하 의료기구 외래진료 및 응급진료 연환자수 (단위: 명)

진료유형		연환자수
1	종합의료기관 응급진료 연환자수(Accident and emergency attendances)	2,226,903
2	종합의료기관 외래진료 연환자수(General outpatient attendances)	5,885,721
3	전문의료기관 외래진료 연환자수(Specialist outpatient attendances)	7,141,161
	3.1 의사진료(Doctor consultation)	6,792,640
	3.1.1 내과(Medicine)	1,942,328
	3.1.2 외과(Surgery)	856,982
	3.1.3 정형외과(Orthopaedics and Traumatology)	567,418
	3.1.4 산부인과(Obstetrics and Gynaecology)	551,665
	3.1.5 소아과(Paediatrics)	247,371
	3.1.6 안과(Eye)	1,040,555
	3.1.7 이비인후과(Ear, Nose and Throat)	324,209
	3.1.8 정신과(Psychiatry)	791,963
	3.1.9 임상종양과(Clinical Oncology)	367,245
	3.1.10 기타(Others)	102,904
	3.2 간호사 클리닉(Nurse clinic)	348,521
4	가정의학 전문 클리닉(Family medicine specialist clinic attendances)	288,267

출처: 홍콩 병원관리국

- 2014년 홍콩 위생서 산하 의료기구 외래진료 연환자수는 58만 명이며, 기타진료 연환자수는 596만 명으로 연환자수의 차이가 많이 남
- 기타진료 세부 서비스별 연환자수는 메타돈클리닉²³⁾이 195만 명으로 가장 많고, 가정건강 서비스가 104만 명으로 2위를 차지함

표 23 2014년 홍콩 위생서 산하 의료기구 외래진료 및 응급진료 연환자수 (단위: 명)

진료유형		연환자수
1	외래진료 연환자수(General outpatient attendances)	578,201
	1.1 의사진료(Doctor consultation)	509,056
	1.2 주사(Injectons)	27,697
	1.3 부약(Dressings)	38,275
	1.4 응급진료(Accident and emergency)	3,173
2	기타진료 연환자수(Other outpatient services)	5,961,051
	2.1 가정건강서비스(Family health service)	1,040,769
	2.1.1 모자보건서비스(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1,011,952
	2.1.2 여성건강서비스(Woman health service)	28,817
	2.2 노인건강서비스(Elderly health service)	166,291
	2.3 가슴 및 폐관련 서비스(Tuberculosis and chest service)	696,296
	2.4 공공보건서비스(Social hygiene service)	333,854
	2.5 아동체력 및 지능 측정서비스(Child assessment service)	34,602
	2.6 의학유전관련서비스(Clinical genetic service)	4,778
	2.7 학생건강서비스(Student health service)	528,420
	2.8 에이즈서비스(AIDS Unit)	16,898
	2.9 메타돈 클리닉(Methadone clinics)	1,953,434
	2.10 치과서비스(Dental service)	771,736
	2.11 학교치과보건서비스(School dental care service)	413,973

출처: 홍콩 위생서

23) 메타돈 클리닉: 헤로인 같은 약물 남용을 막기 위해 설립된 곳

II. 세부정보

3. 보건의료 현황

3-1. 주요보건지표

- 홍콩의 주요 보건지표는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홍콩인구 천 명 당 의사수와 간호사수는 각각 1.8명, 6.6명이며, 의사와 간호사수 모두 OECD 평균(9.8명)을 크게 하회함
 - 인구 천 명 당 병상수도 OECD 평균인 4.8병상보다 낮지만, 미국(2.9병상)보다는 4.3병상으로 높음
 - 홍콩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인 80.5년보다 길며, 미국보다 훨씬 긴 수치임

표 24 홍콩과 OECD 주요국 2013년 보건의료지표

주요 보건지표	의사수 (인구 천명당)	간호사수 (인구 천명당)	병상수 (인구 천명당)	기대수명 (년)
홍콩	1.8 (2014)	6.6 (2014)	4.3 (2014)	남 81.2/ 여 86.9 (2014)
한국	2.2	5.2	11.0	81.8
미국	2.6	-	2.9 (2012)	78.8
OECD 평균	3.3	9.8	4.8	80.5

출처: OECD.ORG & 홍콩 위생서

3-2. 주요 질환

1) 주요 질병

- 2013년 의료기관의 총 입원환자 연환자수²⁴⁾는 193만 명이며, 입원 후 퇴원 환자와 죽은 환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임
 - 주요 질환별 연환자수는 비뇨생식계질환(12.6%), 종양(12.6%), 소화계질환(9.5%), 호흡계질환(8.3%), 순환계질환(7.9%) 順

24) 홍콩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진료차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표현인 연환자수로 표현함

표 25 2013년 홍콩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연환자수

(단위: 명)

주요질환		연환자수	비중
*	총 연환자수	1,933,800	100%
1	비뇨생식계질환	243,473	12.6%
2	종양	233,562	12.1%
3	소화계질환	182,823	9.5%
4	호흡계질환	161,374	8.3%
5	순환계질환	153,521	7.9%
6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and contact with health services	129,089	6.7%
7	임신, 분만과 주산기 질환	110,258	5.7%
8	외상 및 중독증	97,837	5.1%
9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66,126	3.4%
10	전염병 및 기생충병	58,916	3.0%
11	안과질환	49,462	2.6%
12	내분비, 영양, 대사 및 면역계 질환	40,304	2.1%
13	정신질환	40,269	2.1%
14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35,080	1.8%
15	신경계질환	33,887	1.8%
16	주산기질환	32,228	1.7%
17	혈액질환 및 면역계질환	27,959	1.4%
18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11,712	0.6%
19	귀 및 인유두종 질환	9,374	0.5%
20	기타 희귀질환	180,428	9.3%
21	진단불명질환	36,118	1.9%

출처: 홍콩 위생서

2) 주요 사망원인

- 2014년 주요 사망원인은 악성종양(103명), 폐질환(41명), 심장질환(40명), 뇌혈관질환(21명) 順
- 악성종양은 2010년부터 5년간 사망자수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질환들은 사망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인지장애증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임

표 26 주요사망원인 및 사망자 수 (2010-2014)

(단위: 인구 십만 명당)

주요질환		2010	2011	2012	2013	2014
1	악성종양 (ICD10 : C00-C97)	111.6	109.7	106.2	104.4	103.1
2	폐질환 (ICD10 : J12-J18)	38.9	39.6	42.0	39.2	41.2
3	심장질환 (ICD10 : I00-I09, I11, I13, I20-I51)	49.5	44.7	43.0	38.5	40.7
4	뇌혈관질환 (ICD10 : I60-I69)	25.4	23.6	22.5	21.4	21.1
5	질병이나 사망의 외부적 원인 (ICD10 : V01-Y89)	19.8	15.8	16.2	18.7	17.2
6	만성 하기도질환 (ICD10 : J40-J47)	15.0	13.6	13.1	11.0	10.7
7	신장질환 (ICD10 : N00-N07, N17-N19, N25-N27)	11.1	10.9	11.1	10.5	10.4
8	인지장애증 (ICD10: F01-F03)	4.6	4.3	4.9	5.1	5.4
9	폐혈증 (ICD10 : A40-A41)	6.4	5.5	5.8	5.7	5.4
10	당뇨병 (ICD10 : E10-E14)	4.0	3.4	2.8	2.5	2.5

* WHO ICD 10차 개정판을 기준으로 작성

* 사망률의 순위는 2014년 기준으로 배열

출처: 홍콩 위생서

- 2014년 성별별 주요 사망원인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8,223명, 5,580명으로 모두 악성종양이 1위를 차지함
 - 남자가 여자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질환으로는 악성종양, 질병이나 사망의 외부적 원인, 그리고 만성 하기도질환이 있음

표 27 2014년 성별별 주요사망원인 및 비중

(단위: 명)

주요질환		합계	남자	여자
*	총 사망인원 ²⁵⁾	45,710 (100%)	25,378 (100%)	20,328 (100%)
1	악성종양 (ICD10 : C00-C97)	13,803 (30.2%)	8,223 (32.4%)	5,580 (27.4%)
2	폐질환 (ICD10 : J12-J18)	7,502 (16.4%)	4,038 (15.9%)	3,464 (17.0%)
3	심장질환 (ICD10 : I00-I09, I11, I13, I20-I51)	6,405 (14.0%)	3,510 (13.8%)	2,895 (14.2%)
4	뇌혈관질환 (ICD10 : I60-I69)	3,336 (7.3%)	1,717 (6.8%)	1,619 (8.0%)
5	질병이나 사망의 외부적 원인 (ICD10 : V01-Y89)	1,834 (4.0%)	1,175 (4.6%)	659 (3.2%)
6	만성 하기도질환 (ICD10 : J40-J47)	1,742 (3.8%)	1,310 (5.2%)	432 (2.1%)
7	신장질환 (ICD10 : N00-N07, N17-N19, N25-N27)	1,684 (3.7%)	813 (3.2%)	871 (4.3%)
8	인지장애증 (ICD10: F01-F03)	1,112 (2.4%)	445 (1.8%)	667 (3.3%)
9	패혈증 (ICD10 : A40-A41)	884 (1.9%)	383 (1.5%)	501 (2.5%)
10	당뇨병 (ICD10 : E10-E14)	390 (0.9%)	186 (0.7%)	204 (1.0%)

* 사망률의 순위는 통합순위로 배열

* 총 사망인원 합계에 성별불명의 인원 4명이 포함됨

출처: 홍콩 위생서

25) 총 사망인원은 10대 사망질환 외에 기타 원인도 포함하고 있음

표 28 2014년 연령별 주요사망원인 및 비중

(단위: 명)

주요질환		a < 1	1 < a ≤ 4	5 < a ≤ 14	15 < a ≤ 44	45 < a ≤ 64	65 < a
*	총 사망인원 ²⁶⁾	106 (100%)	44 (100%)	53 (100%)	1,478 (100%)	7,744 (100%)	36,259 (100%)
1	악성종양	1 (0.9%)	16 (36.4%)	15 (28.3%)	442 (29.9%)	4,061 (52.4%)	9,267 (25.6%)
2	폐질환	2 (1.9%)	4 (9.1%)	3 (5.7%)	49 (3.3%)	371 (4.8%)	7,072 (19.5%)
3	심장질환	4 (3.8%)	5 (11.4%)	5 (9.4%)	133 (9.0%)	910 (11.8%)	5,347 (14.7%)
4	뇌혈관질환	3 (2.8%)	3 (6.8%)	3 (5.7%)	67 (4.5%)	466 (6.0%)	2,793 (7.7%)
5	질병이나 사망의 외부적 원인	3 (2.8%)	4 (9.1%)	9 (17.0%)	506 (34.2%)	558 (7.2%)	750 (2.1%)
6	만성 하기도질환	0 (0.0%)	0 (0.0%)	2 (3.8%)	8 (0.5%)	109 (1.4%)	1,622 (4.5%)
7	신장질환	1 (0.9%)	0 (0.0%)	0 (0.0%)	16 (1.1%)	151 (1.9%)	1,516 (4.2%)
8	인지장애증	0 (0.0%)	0 (0.0%)	0 (0.0%)	0 (0.0%)	17 (0.2%)	1,095 (3.0%)
9	폐혈증	5 (4.7%)	1 (2.3%)	2 (3.8%)	12 (0.8%)	71 (0.9%)	793 (2.2%)
10	당뇨병	0 (0.0%)	0 (0.0%)	0 (0.0%)	10 (0.7%)	57 (0.7%)	323 (0.9%)

* 사망률의 순위는 통합순위로 배열

* 총 사망인원 집계에서는 나이불명의 인원 20명을 제외함

출처: 홍콩 위생서

26) 총 사망인원은 10대 사망질환외에 기타 원인도 포함하고 있음

3-3. 의료비지출

1) 의료분야 예산

- 의료 보조비, 위생서, 식품 및 위생국산하 위생과 3개부서의 예산으로 구성됨

표 29 2015-2016년 홍콩정부 의료재정예산

(단위: 십만 HK\$)

예산유형		예산금액
1	의료 보조비 (Auxiliary Medical Service)	87.3
2	식품 및 위생국산하 위생과 (Government Secretariat: Food and Health Bureau- Health Branch)	50,400.6
	2.1 위생(Health)	371.6
	2.2 의원관리국(Subvention: Hospital Authority)	49,876.0
	2.3 프린스 필립 치과(Subvention: Prince Philip Dental Hospital)	153.0
3	위생서(Department of Health)	6,470.5
	3.1 법정직책(Statutory Functions)	719.3
	3.2 질병예방(Disease Prevention)	3,010.6
	3.3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391.4
	3.4 의료치료(Curative Care)	842.9
	3.5 재활치료(Rehabilitation)	110.2
	3.6 마약중독치료(Treatment of Drug Abusers)	155.0
	3.7 공무원의료(Medical and Dental Treatment for Civil Servants)	1,232.4
	3.8 병원관리국 재직자의 인사관리 (Personnel Management of Civil Servants Working in Hospital Authority)	8.7

출처: 홍콩 병원관리국

2) 의료비 지출 비중

- 2013-14년 정부 공공지출 중 위생분야 지출은 676억 홍콩달러로 총 정부지출(4,573 홍콩달러)의 14.8%를 차지함
- 2011-12²⁷⁾년 홍콩의 전체 의료위생지출은 1,019만 홍콩달러로 GDP의 5.2%를 차지하였고 인당 의료위생지출이 14,422 홍콩달러임
 - 그 중 공공의료위생지출은 492만 홍콩달러로 전체 의료위생지출의 48.3%를 차지하며 이에 따른 인당 지원 금액은 6,966 홍콩달러로 추산됨
 - 따라서 51.7%를 차지하는 개인지출부분은 총 지출 527만 홍콩달러로 인당 지출금액은 7,456 홍콩달러임
- 48.3%를 차지하는 공공의료위생지출에 비해 공립의료기관을 사용할 시의 비용감면은 95%이상을 차지하기에 홍콩주민의 의료비용부담은 낮은 편임
 - 홍콩정부의 공립의원[公立醫院] 및 진소[診所]에 대한 지원 금액이 진료지출의 96.8%에 달하며 의료보조대상은 100%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음
 -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저렴하여 정부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임

3) 의료비용(의료수가)

- 병원 관리국 산하의 의원과 진소는 3가지의 수가기준을 따름
 - 수가기준은 공공수가(자격적용자), 공공수가(자격비적용자) 및 개인수가로 나뉨

표 30 병원 관리국 산하 의료기관 수가기준-1

(단위: HK\$)

공공수가-자격 적용자		
서비스		수가
1	응급진료 Accident & Emergency	100 / 회
2	입원서비스(응급병상) In-patient (general acute beds)	입원비 50 ; 병상비 100/일
3	입원서비스(요양, 재활, 간호 및 정신과병상)	68 / 일

27) 최신통계자료로 그 이후의 년도의 데이터는 발표되지 않음

	In-patient (convalescent, rehabilitation, infirmary & psychiatric beds)	
4	전문 진료과목 진료 (전문의료서비스) Specialist out-patient (including allied health services)	첫 회 100 ; 그 뒤 60 / 회
5	종양 및 신장질환 주간 진료 Day procedure and treatment at Clinical Oncology Clinic and Renal Clinic	80 / 회
6	일반 외래진료 General out-patient	45 / 회
7	부약 및 주사 Dressing & Injection	17 / 회
8	노인질환, 정신질환 및 재활 주간진료 Geriatric, Psychiatric & Rehabilitation day hospital	55 / 회
9	간호사 간호(일반진료) Community nursing (general)	80 / 회
10	간호사 간호(정신질환) Community nursing (psychiatric)	Free
11	지역의료기관 서비스 Community allied health services	64 / 회

출처: 홍콩 병원관리국

표 31 병원 관리국 산하 의료기관 수가기준-2

(단위: HK\$)

공공수가-자격 비적용자		
	서비스	수가
1	응급진료 Accident & Emergency	990 / 회
2	입원서비스(일반진료과목) In-patient (general hospitals)	4,680 / 일
3	입원서비스(정신과) In-patient (psychiatric hospitals)	1,940 / 일
4	중증환자실 Intensive care ward/unit	23,000 / 일
5	중점간호실 High dependency ward/unit	12,000 / 일
6	영아간호실 Nursery	1,110 / 일
7	산부인과 분만서비스 Obstetrics package charge	39,000 or 90,000
8	전문과목 진료(전문의료기관 포함) Specialist out-patient (including allied health services)	1,110 / 회
9	종양 주간 진료	800 / 회

	Day procedure and treatment at Clinical Oncology Clinic	
10	안과 주간 진료 Day procedure and treatment at Ophthalmic Clinic	660 / 회
11	일반 외래진료 General out-patient	385 / 회
12	부약 및 주사 Dressing & Injection	100 / 회
13	노인질환 주간진료 Geriatric day hospital	1,850 / 회
14	재활 주간진료 Rehabilitation day hospital	1,250 / 회
15	정신과 주간진료 Psychiatric day hospital	1,150 / 회
16	간호사 간호(일반진료) Community nursing (general)	430 / 회
17	간호사 간호(정신질환) Community nursing (psychiatric)	1,380 / 회
18	지역의료기관 서비스 Community allied health services	1,730 / 회

출처: 홍콩 병원관리국

표 32 병원 관리국 산하 의료기관 수가기준-3

(단위: HK\$)

공공수가-개인		
	서비스	수가
1	입원서비스(응급병원) In-patient (acute hospitals)	
	1.1 1st class	5,640 / 일
	1.2 2nd class	3,760 / 일
2	입원서비스(기타병원) In-patient (other hospitals)	
	2.1 1st class	5,610 / 일
	2.2 2nd class	3,740 / 일
3	중증환자실 Intensive care ward/unit	14,600 / 일
4	중점간호실	9,500 / 일

	High dependency ward/unit	
5	영아간호실 Nursery	925 / 일
6	입원시의 의사진료 In-patient consultation (per specialty)	680 ~ 2,160 / 회
7	외래진료 Out-patient consultation	
7.1	첫 진료 Initial consultation	680 ~ 2,160 / 회
7.2	차후진료 Subsequent follow up consultation	555 ~ 1,420 / 회
8	간단 간호(부약 및 주사) Minor nursing procedures (such as injection and dressing)	360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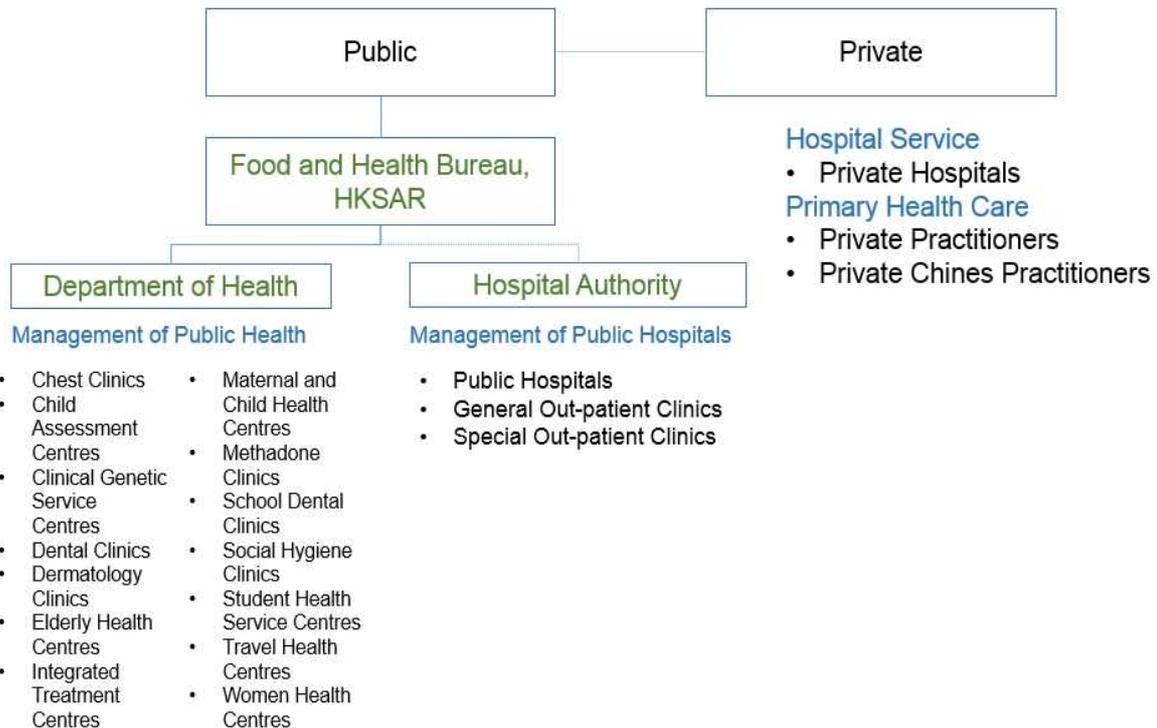
출처: 홍콩 병원관리국

4. 보건의료체계

4-1. 보건의료체계

□ 홍콩의 의료시스템: 듀얼트랙(Dual Track)

그림 6 홍콩의 의료시스템



출처: 홍콩 정부 홈페이지(<http://www.gov.hk/>)

- 홍콩의 보건·의료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성된 듀얼 트랙 체계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됨
 - 공공부문은 홍콩 보건·의료시스템의 기반으로 홍콩이라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민간부문은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위생서(Department of Health)는 정부에 보건자문을 제공하고 보건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식품·보건서 산하 기구로써, 홍콩 시민에게 건강 홍보·예방·치료·회복 등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 병원관리국(HA)은 홍콩의 공공병원을 관리하고 있는 식품·보건서 산하 독립기구로써, 공병원·전문진료·원격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1) 정부·공공의료서비스

- 위생서는 32개의 모자건강센터를 운영 중이고, 병원관리국은 47개 전문의 외래 클리닉과 73개 일반 외래 클리닉을 운영 중임(2014년 기준)
- 인구 밀집 지역에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클리닉을 개설해 일반 진료서비스 외에 전문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
 - 인구 밀집지역에 소재한 23개 클리닉은 야간(일반)진료를 운영하며 이중 12개 클리닉은 일요일과 공공휴일에도 운영함
- 홍콩주민은 매번 일반클리닉 내원 시 X-ray, 화학반응테스트, 약 처방을 모두 포함해서 45HK\$를 지불
 - 일반클리닉에 내원한 환자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클리닉으로 이송하게 되고, 전문의클리닉 초진비는 100HK\$, 재진 시부터는 매회 60HK\$를 지불함(약 처방에는 10HK\$를 추가 지불)
- 환자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무료진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결핵, 한센병, 성병환자는 무료진료가 가능함
- 모자보건 관련, 임산부의 출산 전후 관리 및 영아의 전반적인 면역체계형성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무료 제공함
- 홍콩주민이 공공병원의 일반병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 500HK\$를 지불하고, 급성 환자 병상일 경우 1일 100HK\$, 비급성환자일 경우 1일 68HK\$를 지불함
 - 이 비용은 식사, X-ray, 화학반응테스트, 정기적 약 처방 및 각종 특별치료(외과수술·방사선치료·물리치료 등) 비용을 포함하며 환자가 지불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무료진료를 신청할 수 있음
- 병원관리국은 퇴원 후 통원이 불가능한 환자를 집에서 돌봐주는 지역간호(Community Nursing) 서비스제도를 운영 중임

2) 민간의료서비스

- 홍콩 사립병원의 진료비는 매 내원 시 140HK\$에서 400HK\$까지 다양하며, 전문의 진료는 이 비용을 상회함
 - 진료비에 약처방 수수료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별도 지불하며 화학반응테스트, X-ray검사 등도 모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함
- 홍콩 내 11개 사립 종합병원이 있음(2014년 기준)
 - 각 병원의 병상비용은 병실 종류에 따라 1일 100HK\$에서 수 천 HK\$에 이르며 입원 환자는 의사에게 지불하는 일일진료비 외에도, 각종 비용(약처방, 드레싱 등)을 별도 지불함

3) 기타 의료서비스

- 진료소(Clinic) : 진료소조례(Medical Clinics Ordinance)에 의거해 보건국에 등록된 진료소는 총 113개(2014년 기준)로 이중 일부 진료소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며 저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학생 건강보호 서비스 :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학생건강서비스센터(Student health service centers)는 학생들의 성장주기를 고려한 전반적인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 등을 제공
 - 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건강평가센터나 적절한 전문가로부터 추가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국은 총 12개의 학생건강서비스센터와 3개의 건강평가센터(special assessment centers)를 운영 중임(2014년 기준)
 - 청소년건강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
- 질병예방서비스 : 보건국 산하의 모자건강센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10종 전염병의 면역예방접종을 실시 중

4-2. 의료보험제도

- (의료보험제도)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보험제도는 없으나, 영국식 제도를 받아들여 진료비의 일정금액(100달러)까지는 개인이 부담하고, 정부가 진료비의 90~95%를 부담하고 있음
- 특히, 홍콩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진료비에 대한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임

4-3. 의료기관 현황

- 2014년 홍콩 의료기관 수는 요양원이 55개로 가장 많으며, 의원관리국 산하 공립병원(42개), 교도서 내 의료시설(22개), 개인병원(11개) 順
- 병상수는 의료기관 수와는 다르게 공립병원이 27,631병상으로 월등히 많으며, 요양원이 4,964병상, 개인병원이 3,906병상 順

표 33 홍콩 의료기관 현황(2014년 말)

(단위: 개, 병상)

의료기관 유형		합계
1	의원관리국산하 공립병원 (Private Hospitals and Institutions under Hospital)	42
	* 병상수(Beds)	27,631
2	개인병원 (Private Hospitals)	11
	* 병상수(Beds)	3,906
3	요양원 (Nursing Homes)	55
	* 병상수(Beds)	4,964
4	교도소내 의료시설 (Hospitals under Correctional Institutions)	22
	* 병상수(Beds)	821

출처: 홍콩 위생서

4-4. 의료인력 현황

- 2014년 홍콩 의료인력 수는 간호사가 48,047명으로 가장 많으며, 의사(13,417명), 중의학 의사(9,655명), 조산사(4,669명) 順

표 34 홍콩 의료인력현황(2014년 말)

(단위: 명)

의사유형		인원 계	의사수 對 홍콩 주민수
1	의사(Doctors)	13,417	1:541
2	중의학 의사(Chinese Medicine Practitioners)	9,655	
2.1	등록 중의학 의사 (Registered Chinese Medicine Practitioners)	6,898	1:1,053
2.2	등록 중의학 의사(제한적) (Chinese Medicine Practitioners with Limited Registration)	64	-
2.3	리스트 중의학 의사 (Listed Chinese Medicine Practitioners)	2,693	1:2,697
3	치과의사(Dentists)	2,343	1:3,100
4	치과위생원(Dental Hygienists)	387	1:18,770
5	간호사(Nurses)	48,047	1:151
6	조산사(Midwives)	4,669	1:1,556
7	약제사(Pharmacists)	2,390	1:3,039
8	임상기사(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3,228	1:2,250
9	직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s)	1,677	1:4,332
10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s)	2,624	1:2,768
11	검안사(Optometrists)	2,140	1:3,394
12	방사선사(Radiographers)	2,042	1:3,557
13	척추지압사(Chiropractors)	192	1:37,834

출처: 홍콩 위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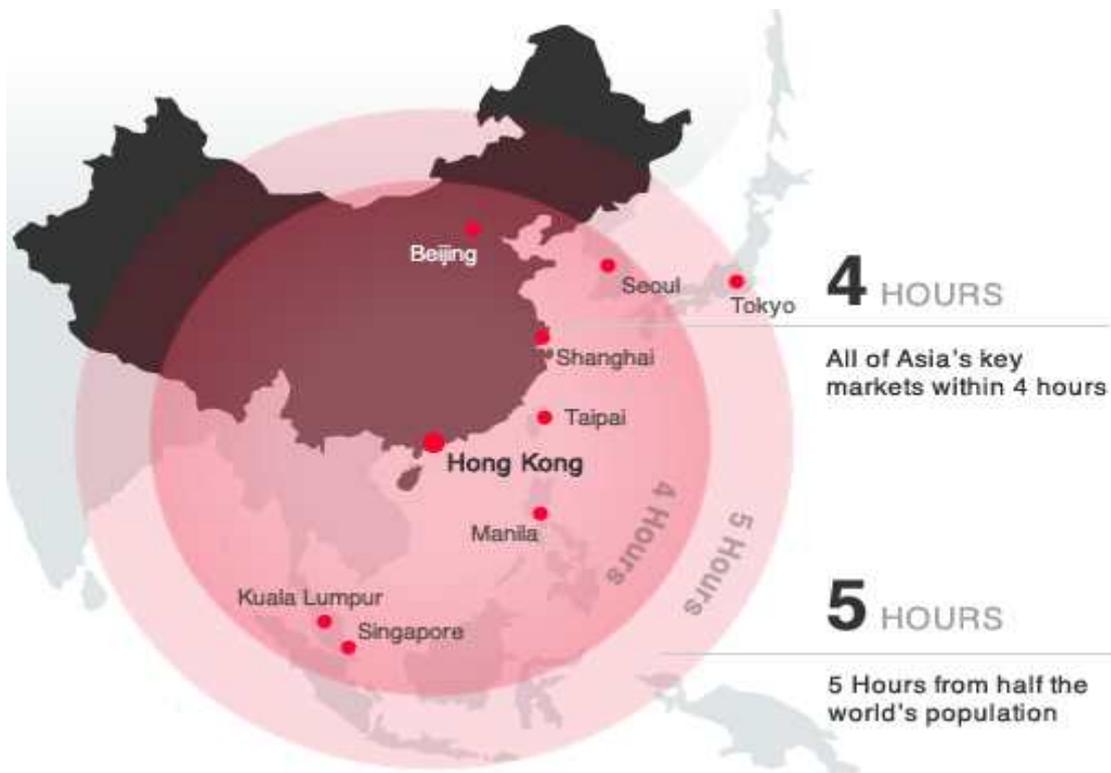
5. 외국인 투자(관련 법)

5-1. 홍콩투자동향

1) 투자환경

- 홍콩은 지리적으로 동부 및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며, 대외교통이 발달하여 지역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림 7 홍콩의 지리적 위치



출처: 홍콩 투자청

- 홍콩공항은 여객 및 화물 수송량이 세계3위이며 100여개의 항공사가 홍콩항로를 개척하였고 전 세계 180여개 지역에 직항노선이 있음
- 동부 및 동남아시아의 주요상업도시가 홍콩의 4시간 항공권 내에 위치하였고 5시간 항공권 내에 전 세계 절반의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 홍콩은 아시아의 주요한 상업도시로 국제경제 및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함
 - 전 세계 Top 100 은행 중 71개가 홍콩에 있음
 - 홍콩에 설립된 글로벌 기업 및 regional office가 3,800개를 초과하며 해당 기업의 종업원들이 24만 명을 초과함
 - 2014년 홍콩증권 거래소는 IPO 기준 용자금액은 293억 달러로 아시아 1위, 글로벌 2위를 차지함
- 홍콩은 비즈니스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기업 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함
 - 2015년 World Bank Group에서 선정한 “비즈니스하기 좋은” 지역리스트에서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에 이어 3위를 차지²⁸⁾
 - 조세제도는 간단, 투명, 안정의 원칙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세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임
 - 기업이득세(소득세)는 최저 16.5%이며 개인소득세 또한 15%를 초과하지 않음
 - 홍콩과 세계 주요국가 간에 체결된 CDTA협정²⁹⁾은 이중과세 면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높은 교육수준과 과학연구 환경은 글로벌 인적자원이 집중되게 함
 - 세계수준의 과학연구원 및 연구센터는 세계 각국 인재들이 홍콩에 모여들게 함
 - 홍콩의 대학은 클래스나 양적인 면에서 모두 아시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홍콩대학은 국제고등교육평가기구 Quacquarelli Symonds(QS)가 선정한 세계 50대 대학리스트에서 2위를 차지
- 안정적인 정치 환경은 기업의 성장과 경영에 도움을 줌
 - 홍콩의 주권은 1997년 7월 1일에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됨
 - 특별행정구로서의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³⁰⁾의 정치체제 안에 있으며, 홍콩 고유의 기본법을 통해 개인 및 기업 이익을 효율적으로 보장함
- 특히 중국 내지³¹⁾와의 밀접한 관계는 중국시장을 겨냥하는 글로벌 기업에 더욱 많은 비즈니스 기회와 혜택을 제공함

28)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2015

29) 한-홍콩 CDTA협정은 2014년 8월에 체결되었지만 현재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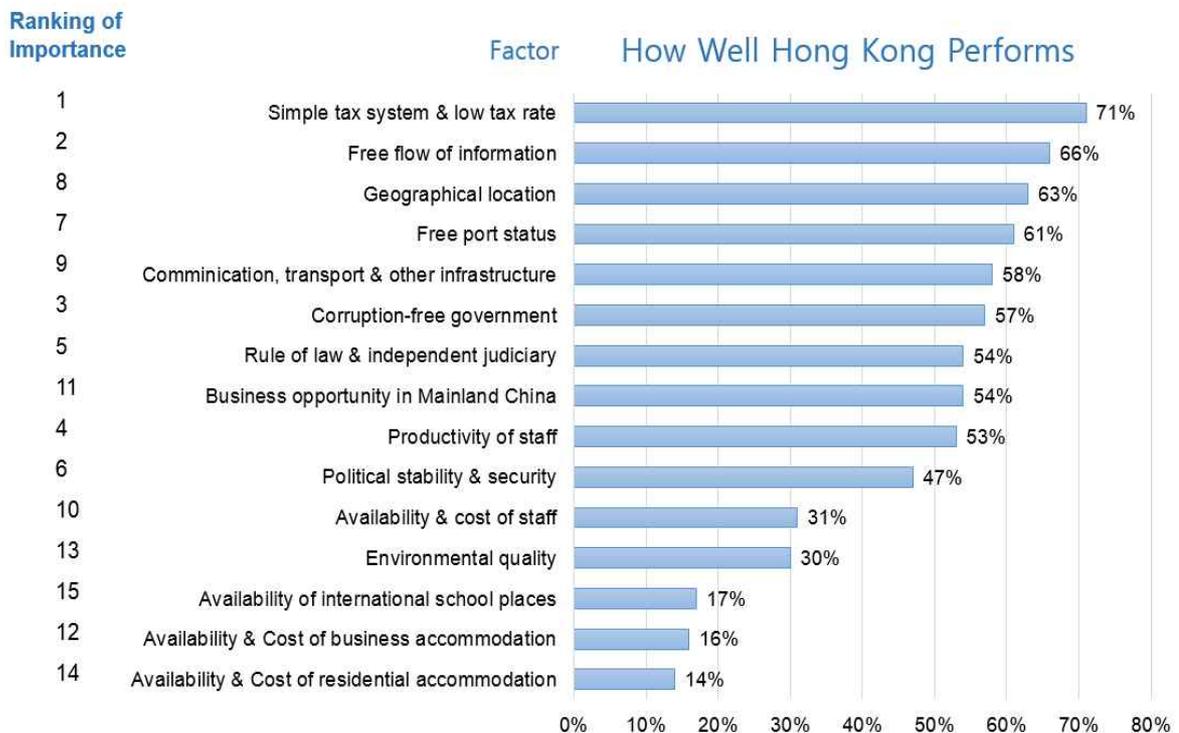
30) 한 개 중국의 전제 하에 중국내지와 다른 자본주의 제도를 실행

31) 홍콩주권을 회수한 후 홍콩상대로 마카오, 대만지역을 제외한 중국을 일컫는 호칭임

- 주권 회수 후, 중국내지와 홍콩의 상업적 연계가 더욱 활발해짐
 -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 경제지대에 위치하였으며 광저우, 선전 등의 도시들과 가까움
 - CEPA³²⁾의 체결로 홍콩에 설립된 회사는 중국내지에서 상업행위에 대해 혜택이 더욱 확대됨
- 2014년 홍콩의 외국인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 홍콩의 투자환경요소에서 간단한 세제와 세율 및 정보자유의 흐름(Free flow of information)이 가장 큰 매력으로 나타남

그림 8 홍콩 기업현황-1

(단위: 개)



출처: Invest Hong Kong, 2015

2) 외국인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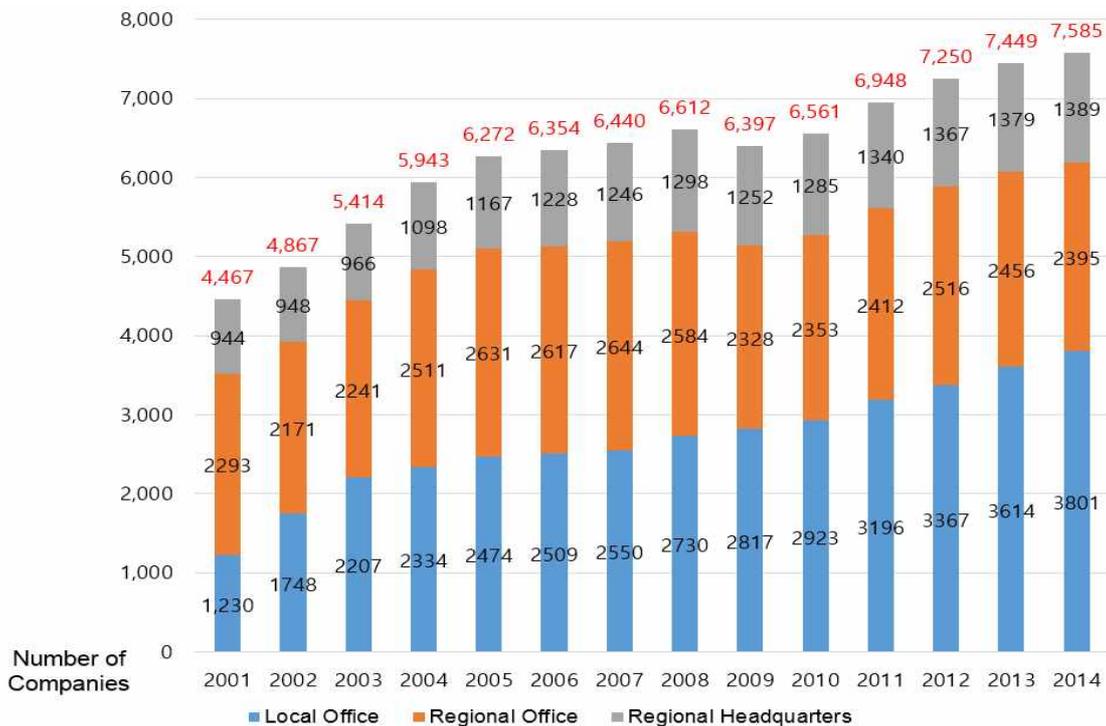
- 홍콩에 설립되는 외국인투자 기업은 매년 증가되고 있음

32) CEPA: Mainland and Hong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2003.06

- 2014년까지 홍콩에 설립 된 외국인투자 기업은 7,585임
- 그 중 지역본부(RHQ)가 1,389개, 지역사무소(RO)가 2,396개, 현지사무소(LO)가 3,801개임
- 지역본부와 현지사무소의 개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현지사무소의 증가 속도가 빠름

그림 9 홍콩 기업현황-2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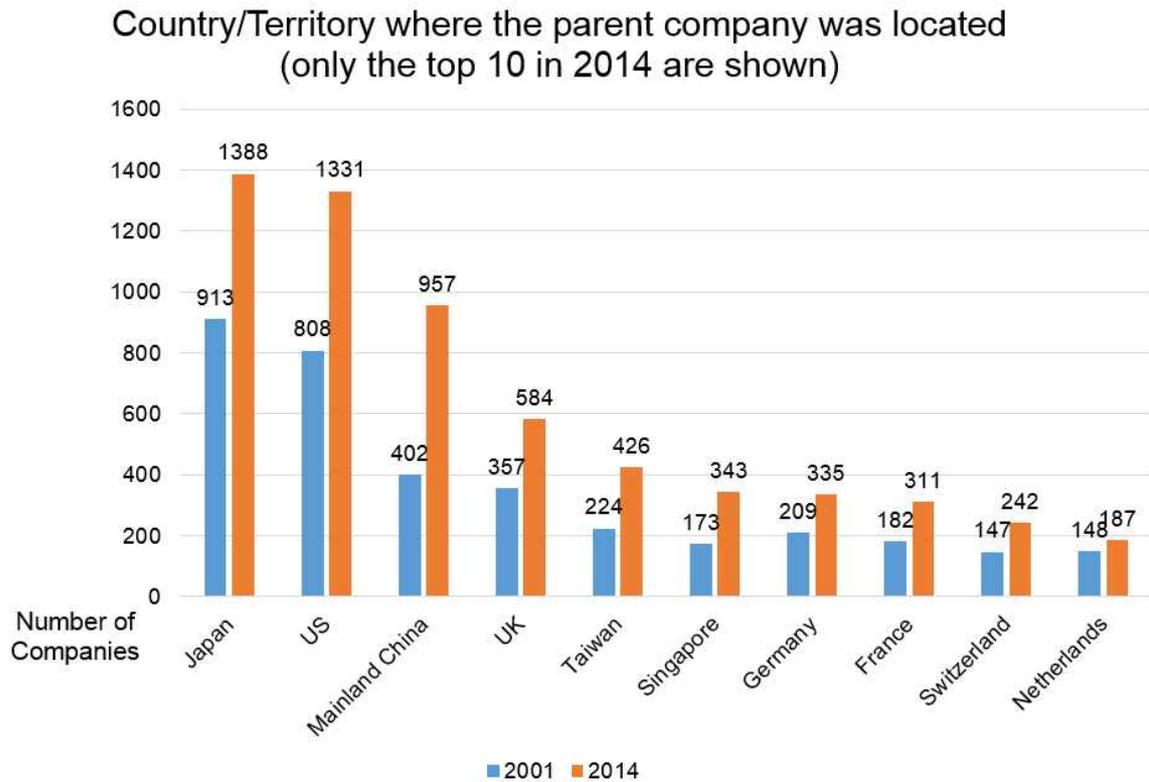


출처: Invest Hong Kong, 2015

- 홍콩에 설립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서 일본계, 미국계, 중국 본토계의 투자자가 순서대로 Top 3를 차지함
 - 일본기업은 1,388개로 2001년에 비해 52% 성장함
 - 미국기업은 1,331개로 2001년에 비해 64% 성장함
 - 중국내지기업은 957개로 2001년에 비해 138% 성장하였고 특히 내지와 홍콩 사이에 체결된 CEPA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그림 10 홍콩 기업현황-3

(단위: 개)



출처: Invest Hong Kong, 2015

5-2. 투자관련 기본 법령 및 정책

1) 외국인 투자관련 기본법령³³⁾

-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2012년 7월에 효력을 발생한 新공사조례³⁴⁾에 따라 기업설립과 운영에 대해 관리함

< 新 공사조례 (Cap. 622) >

- 제1부 - 조례 내 법률용어 및 신생조례에 대한 설명
- 제2부 - 회사등록처 및 회사등록책자 관련 규정
- 제3부 - 기업설립 및 관련사항 과 재등록
- 제4부 - 기업 자본금의 정의
- 제5부 - 기업 자본금 관련 규정
- 제6부 - 이윤 및 자산의 분배
- 제7부 - 채권증서 관련 규정
- 제8부 - Registration of Charges
- 제9부 - 회계장부 및 심사 관련 규정
- 제10부 - Directors and Company Secretaries
- 제11부 - 임원(주주)의 공정거래의무
- 제12부 - 기업경영 및 결의와 결의절차
- 제13부 - Arrangements, Amalgamation, and Compulsory Share Acquisition in Takeover and Share Buy-Back
- 제14부 - 기업 및 기업구성원의 이익보호 보호
- 제15부 - 제명 혹은 말소로 인한 기업해산

33) 글로벌윈도우 홈페이지 <http://www.globalwindow.org/>

34) 공사조례(公司條例): 홍콩법례 622장이며 921의 조목과 11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었으며 홍콩에서의 기업설립과 운영에 법률적인 틀을 제공해줌

< 新 공사조례 (Cap. 622 > - 계속

- 제16부 - 해외기업의 홍콩에서의 영업지점 설립에 관한 규정
- 제17부 - Companies not Formed, but Registrable, under this Ordinance
- 제18부 - Communications to and by Companies
- 제19부 - 공식수사 및 기업조사 관련 규정
- 제20부 - 기타사항
- 제21부 - 新공사조례실시로 인한 변경조목, 보류조목 및 이행성 조목

출처: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홈페이지, www.cr.gov.hk

○ 新 공사조례의 경우 주식액면가액, 이사 임명, 회계감사, 임직원개인정보 및 보고서 등의 면에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음

1) 주식의 액면 가액 폐지

- 현행 회사법에는 주식자본을 가진 모든 홍콩회사는 주식의 액면가를 표기해야하지만 국제사회의 흐름과 기업들의 주식자본 경영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개정회사법에는 이 규정이 폐지될 예정
- 규정의 적용은 개정된 법 시행 시점 이후에 등록하는 회사는 물론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도 적용되고 이에 따라 수권자본, 자본 잉여금 등의 개념이 사라짐
- 또한 기존회사들의 정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유관 조항들은 삭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정법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은 이 조항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관 등의 서류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음
- 주식 액면가 폐지의 영향을 받는 서류들로는 헌법문서,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체결한 약정, 해당 기업 관련 신탁 증서, 당사 발행 주권 등이 있음

2) 이사의 선임과 책임

- 홍콩에서는 현재 이사를 개인이 아닌 회사로 선임하여 운영해오고 있는데 개정법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인 이상의 자연인을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개정

- 새로운 회사법이 시행될 경우 신규 및 기존설립회사들은 개정법 시행 후 최소 6개월 내에 개인이사를 선임한 후 Companies Registry에 신고해야 함
- 만약 개정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의 모든 책임자들은 위법의 책임을 지고 100,000 홍콩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며 벌금 납부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매일 2,000 홍콩달러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됨

3) 회계 감사관의 권한 강화 및 의무와 책임

- 회사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거나 관련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피감사회사, 해당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홍콩, 또는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자회사의 담당자로 하여금 대상 자회사의 회계자료를 포함한 자료 및 해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에 응하지 않는 피 감사회사의 담당자는 25,000홍콩달러 미만의 벌금을 내야하며 계속 따르지 않을 경우 매일 700홍콩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됨
- 또 회계감사관의 감사내용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료 또는 해명 요청에 대해 피 감사자가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감사 보고서에 작성해야 함
-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와 고의로 누락한 경우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150,000 홍콩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됨

4) 임직원 개인정보의 비공개

- 회사 임직원의 거주지 주소 및 신분증 번호는 개정법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지 않음
- 따라서 이후의 임원들은 거주지 주소 대신 회사의 등록된 주소를 임원들의 주소지로 기재하게 되며 대중이 임직원의 정보 열람을 원할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5) 재무 및 이사보고서의 간소화

- 개정된 법에서는 소규모 사기업의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의 경우 간소화된 재무보고서 및 이사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령이 완화됨
- 소규모 사기업의 조건은 1)전년도 매출 1억 달러 미만 2) 총 자산 1억 달러 미만 3) 직원 수 100명 미만 등의 요건 중 최소 2가지 항목을 충족해야 함
- 반면 소규모 사기업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는 이사가 연간보고서에 사업 리뷰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리뷰는 회사가 대처해야 할 리스크 및 불확실한 요소, 미래발전에 대한 전망,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직원, 환경, 고객 및 공급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됨

2)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

□ 산업정책

- 홍콩은 글로벌 자유경제지역으로 투자에 있어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이 없으며 이에 따라 산업정책 또한 공정하게 적용됨
- 홍콩은 산업구조의 집약화를 지향하면서 IT, 문화콘텐츠 등의 기술 집약형 기업유치에 대하여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산업단지³⁵⁾를 조성하여 해당 기업들을 집중시켜 R&D에 대한 효율향상을 도모함
- 홍콩은 대다수의 투자분야에 대하여 개방된 상태이지만 공익사업, 위험업종, 공해업종과 공중위생업종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취함
 - 우편, 철도, 수도 등 공익사업분야는 투자금지 업종 임
 - 위험업종, 공해업종 및 공중위생업종은 홍콩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함

□ 세수정책

- 홍콩의 낮은 세율과 단순한 세제제도는 투자자들에 대하여 높은 매력도를 가지고 있음
- 홍콩은 속지원칙의 세제를 실시하고 있어 홍콩현지에서 발생한 이윤과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함
- 특히 중국내지와 달리 증치세와 영업세가 없으며 이득세(利得稅)³⁶⁾, 신봉세(薪俸稅)³⁷⁾와 물업세(物業稅)만 징수하며 연간을 단위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함

1) 이득세

- 홍콩은 법인 이득세는 16.5%이며 비법인의 세율은 15%임
- 차입자금의 이자, 빌딩과 부지의 임대료, 임직원의 년봉 및 퇴직금, 회수불능 대금, 상표 및 특허권 등록비용, R&D지출등 사항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신봉세

35) Hong Kong Science Park, InnoCentre Center, Cyberport 등 단지를 일컬음

36) 이득세: 중국내지의 기업소득세와 같고 한국에서의 법인세와 같음

37) 신봉세: 중국내지의 개인소득세와 같고 한국에서의 급여소득세와 같음

- 개인의 업무로 인한 수입은 신봉세를 내야함
- 월급, 상여금, 장려금, 수당 등 비용은 모두 수입으로 간주되며 퇴직금 또한 신봉세를 내야 함
- 기본세율은 2%~17%사이이며 최대 납부금액은 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음

3) 물업세

- 부동산을 통해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임
- 임대수입에서 유지보수비용의 20%를 제외한 부분의 15%임
- 단 임대수입으로 인해 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면제됨

○ 홍콩과 세계 주요국가 간에 CDTA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해당 협정에 근거하여 기업 및 개인의 이중과세를 방지

□ 기업경영지원 정책

- 홍콩정부는 적극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경영에 편리를 제공함
 - 정부기관인 ‘홍콩투자청’은 투자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정상적인 경영을 하도록 지원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기획, 준비, 개시 및 확장 4가지 단계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경영에 편리를 제공함

표 35 홍콩투자청 제공 서비스 내역

단계	서비스 구분	서비스내역
초기상담	세무회계	기본 자료 제공 및 회계사 연결. 투자가 인센티브 결정 혹은 조정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법률	기본 자료 제공 및 변호사 연결
	고용노사	헤드 헌터 연결 및 노사 문제 조언
민원서류	입지	회사 사무실 및 부지 물색 조언 및 부동산 업자 연결
주요제도 안내	비자	비자 발급 관련
	관세	세금 규정 안내
	국세	세금 규정 안내
	외투신고등록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서류 제출 절차 등은 CR(Company Registry, 기업등록청)을 통해 진행

기타	생활정착	홍콩 정착 조언 - 자녀 국제 학교 입학, 건강 보험, 네트워킹
	사업개시 및 확장	사업론칭시 언론홍보 지원, 개업식에 투자청 임원 축하 지원, 기투자기업이 비즈니스 확장 희망시 네트워킹 및 매칭서비스, 애프터케어 서비스 등

출처: Kotra 홈페이지 <http://www.globalwindow.org>

○ 고신기술산업, IT 및 문화컨텐츠 관련 기업에 대해 완벽한 인프라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R&D와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음

- 글로벌수준의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기업에게 양호한 환경을 제공함
 - 홍콩과학원, 홍콩사이버파크, 홍콩R&D센터, 홍콩디자인센터등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홍콩과 기업의 공동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 전담부서인 창신과학서[創新科學署]를 통해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함
 - 50억 홍콩달러의 창신 및 과학펀드를 만들어 기업의 R&D에 제공해줌(ITSP³⁸)
 - 일반지원정책을 통해 연구원 지원과 특허권신청지원을 제공함(GSP³⁹)
 - 대학-산업연동정책으로 회사의 교육기관간의 협작을 추진함(UICP⁴⁰)
 - 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에 보장을 제공(ESS⁴¹)

□ 외국인투자 우대정책

- 홍콩은 철저한 자유경제 원칙에 입각하고 있어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부지제공, 임대료 인하와 같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 조치가 없음
- 단,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국내기업과 차별 없이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음

38) The Innovation and Technology Support Programme (ITSP)

39) The General Support Programme (GSP)

40) The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Programme (UICP)

41) Enterprise Support Scheme (ESS)

5-3.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 투자진출형태⁴²⁾

- 홍콩의 기업 형태는 법인기업, 개인기업, 연락사무소 3가지 형태로 나뉨
 - 법인기업은 유한회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의 책임이 제한됨
 - 개인기업은 기업 법정대표자가 무한책임을 지는 기업형태이며 기업의 모든 상행위는 대표자의 책임 하에서 진행됨
 - 연락사무소는 간단한 기업형태로 간단한 사업자등록으로만 설립할 수 있으나 상업행위가 많은 제한을 받음
- 또한 설립방식에 따라 단독, 합작로 나뉘고 형태에 따라 본사와 지사의 분류가 있음

1) 법인기업

- 설립방법에 따라 신규법인 설립과 기 등록법인 인수 2가지 방식이 존재함
 - 신규법인 설립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설립절차 및 인허가에 대하여 비교적 개방적임
 - 등기이사는 최소 1인 이상(18세 이상)이어야 하나 반드시 홍콩 거주자일 필요는 없으며 주주는 최소 1인 이상(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이사와 겸직이 가능함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은 주주 당 1홍콩달러이며 수권자본금에 대하여 1천 홍콩달러 당 1홍콩달러(0.1%)의 인지세 (Stamp duty, 3만 홍콩달러 한도)가 부과되고 수권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전문 기관들이 제공하는 정관은 모든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조례가 정한 표준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음
 - 합작 등으로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정관을 원하는 대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기 등록 법인 인수는 홍콩 내 회계법인 또는 에이전트들이 기 등록 해 놓은 회사를 인수하는 형태임

42) 글로벌윈도우 홈페이지 <http://www.globalwindow.org/>

- 기 등록 해놓은 회사들의 리스트 중에서 회사명을 선택해야 하므로 회사명의 선택에 제한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3일 이내여서 즉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책임범위에 따라 비공개 유한회사 와 공개 유한회사로 나뉨

- 공개 유한회사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업 등록국에 제출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연차보고서는 설립 일이 아닌 주주총회의 기준일로 하여 제출해야 함
- 비공개 유한회사 연간 사업내용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기에 운영이 간편하지만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고 주주의 수가 50인 이하로 한정되며, 주식발행 및 회사채 발행 시 공모가 금지되고 있음

2) 개인기업

- 일반 법인과는 달리 별도의 법인 등기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해 설립비용 및 유지관리가 저렴하고 회사설립이 신속한 장점이 있어 홍콩의 회사 종류 중 가장 설립이 간단하고 신속한 형태임

3)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의 경우 절차상 설립이 용이하고 연간 사업내용 (이사 명부, 주소지의 위치 및 인원수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익 추구 행위를 하지 않는 회사들이 선호함
- 연락사무소는 간단한 사업자등록만으로 설립 가능하나 수익창출 행위가 제한돼 사무실 임대차등을 제외한 영업상의 계약 체결이 불가함
- 수익창출 행위가 금지된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회계보고 및 결산, 외부감사, 회사간사 선임 등이 불필요하게 됨
-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사 또는 현지 단독법인 형태로 변경해야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가 필요함

□ 투자진출절차

1) 신규법인 설립절차

순서	단계	기관	소요비용	소요기간	필요서류	비고
1	상호명 확인	홍콩 공사 주책처 43)	무료	실시간 확인가능		홍콩 기업등록국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사명의 영문/중문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가능
2	홍콩법인 설립 신청서 등록	홍콩 공사 주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등록비용 (HK\$1,720) 인지세 수권자본금의 0.1% (Max. HK\$ 30,000) 	4~6 영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mNC1 • 정관 • 등기이사, 주주 여권사본 및 영문 거주지 증명서 (주민 등록초본 영문판) • 한국 본사의 현지 법인일 경우 한국 본사의 영문 사업자 등록증 • 회사간사의 HK ID 혹은 법인 간사 사업자 등록증 	홍콩 법인 설립 신청서 접수 후 4~6 영업 일수 이후 홍콩 기업 등록국에서 법인 설립증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를 발급 받고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
3	홍콩법인 사업자 등록증 신청	홍콩 세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년 단위 신용사업자 등록증 비용 (HK\$ 250) 단위 갱신용사업자 등록증 비용 (HK\$ 3,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편접수 :30분 • 우편접수 :2영업일 	* Form 1(b)	홍콩 기업 등록국에서 발행 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과 Form1(b)를 홍콩 세무국에 제출하면 홍콩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함

2) 기 등록 법인 인수 절차

순서	단계	기관	소요비용	소요기간	필요서류	비고
1	기등록된 상호명 결정	홍콩내 Agent	Agent마다 차등 수수료 부과			Ready-Made company List 상의 회사는 실시간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 5순위 정도의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43) 공사주책처: 기업등록을 관할하는 전담부서임

2	등기이사 변경	홍콩 공사 주책처	무료	1 영업일	Form D2A 등기 이사 여권 사본 및 영문 거주지 증명지 (주민 등 특초본 영문판)	기존의 Nominee Director 에서 신규 등기이사로 변경 작업
3	주주 변경	홍콩 세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비용 HK\$ 15 • 주식양수도 금액의 0.1%의 인지세 (주식 양도자, 양수자 모두 부담) 	1 영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주주의 여권 사본 및 영문 거주지 증명지 (주민등록 초본 영문판) • Instrument of Transfer • Bought & Sold Notes • Declaration of Trust 	
4	자본금 증자 및 주식발행	홍콩 공사 주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세 • 증자 자본금의 0.1%(Maximum HK\$ 30,000) 	1 영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m SC4 • Form SC1 	각 기업의 필요성에 의해 진행이 요구되며 인수 시 의무절차는 아님
5	홍콩법인 사업자 등록증 신청	홍콩 세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단위 갱신용 사업자 등록증 비용 (HK\$ 250) • 3년 단위 갱신용 사업자 등록증 비용 (HK\$8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편접수: 30분 • 우편접수 : 2 영업일 	Form1(b)	홍콩 기업 등록국에서 발행된 사업자 등록증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과 Form1(b)를 홍콩 세무 국에 제출하면 홍콩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사업개시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의무 적으로 발급받아야 함

3) 개인회사 & 합자회사 설립절차

순서	단계	기관	소요비용	소요기간	필요서류	비고
1	홍콩개인 & 합자 회사 신청서접 수	홍콩 세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단위 갱신용 사업자 등록증 비용 (HK\$250) • 3년 단위 갱신용 사업자 등록증 비용(HK\$ 3,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편접수 : 30분 • 우편접수 : 2영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m1(a) • Form IRBR177 • 대표자의 여권사본 및 영문 거주지 증명지 (주민등록 초본 영문판) 	Form 1(a) & Form IRBR177을 홍콩 세무국에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30분 이내로 발급 가능

4) 지사등록절차

순서	단계	기관	소요비용	소요기간	필요서류	비고
1	상호명 확인	홍콩 공사 주책처	무료	실시간 확인가능		홍콩기업 등록국의 홈페이지에서 본사의 영문명이 기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
2	홍콩지사 등록 신청서 접수	홍콩 공사 주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회사 등록비용 (HK \$1,720) 지사 등록이 거절되었을 경우 HK\$ 1,425 환불가능 서류 건당 등록비용 (서류 당 HK\$ 20) 	22~30 영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Form NI FormMI (홍콩지사가 홍콩 내 자산 매입에 따른 대출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본사의 정관 한글본 1부 변호사 영문 공증본 1부 본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한글본 2부 및 변호사 영문 공증본 2부 본사의 최근 감사보고서 한글 1부 변호사 영문 공증본 1부 홍콩 지사장의 여권 사본 및 주민등록본 영문판 	지사 등록 서류 접수 후 22~30영업일 후 이후 홍콩공사 주책처에서 지사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Non - HongKong Company)을 발급 받고 지사 등록 절차완료
3	홍콩지사 사업자 등록증 신청	홍콩 세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단위 갱신용 사업자 등록증 비용 (HK \$ 250) 3년 단위 갱신용사업자 등록증 비용 (HK\$ 8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편접수 :30분 우편접수 :2 영업일 		홍콩 기업 등록국에서 발행된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Non Hong Kong Company 와 Form 1(b)를 홍콩 세무국에 제출하면 홍콩지사의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함

5)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순서	단계	기관	소요비용	소요기간	필요서류	비고
1	연락 사무소 설립 신청서 접수	홍콩 세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단위 갱신용 사업자 등록증 비용 (HK \$250) 3년 단위 갱신용 사업자 등록증 비용 (HK\$ 8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편접수: 30분 우편접수 : 2 영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Form 1(a) 대표자의 여권 사본 영문 거주지 증명지 (주민등록초본 영문판) 본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한글) 변호사 공증 1부 영문 변호사 공증본 1부 	Form 1(b)를 홍콩 세무국에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30분 이내로 발급 가능

5-4. 관련 세제

○ 홍콩의 세법은 영연방의 원칙을 근거로 제정함

- 근로소득세 성격의 개인신봉세(Salary tax), 사업소득세 성격인 기업이득세(Profit tax)의 경우 단일법 형식으로 IRO(Inland Revenue Ordinance)를 통해서 규정
- 기타 세목의 부과 및 징수는 각각의 Ordinance에 의거하여 규정하며 주로 판례, 해석 등에 의해 과세가 진행됨

○ 한국, 미국과 같은 종합소득 개념이 없으며, 소득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이 특징임

- 세금이 징수되는 3가지 특정소득 범주에 속하지 않은 어떠한 원천으로부터의 소득도 과세되지 않음
- 납세의무는 소득발생지징수를 원칙으로 하여 홍콩 거주 여부와는 무관하여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인지의 여부로 판단함

○ 또한 자본이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상속세, 증여세가 없음

□ 이득세(利得稅)

○ 조세제도는 간단, 투명, 온정의 원칙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임

- 기업이득세(소득세)는 최저 16.5%이며 개인소득세 또한 15%를 초과하지 않음
- 홍콩과 세계 주요국가와 지역 간에 체결 된 CDTA협정⁴⁴⁾은 이중과세를 면제하고 있음

5-5. 노무관리

1) 구인

- 홍콩 고용 시장의 특징은 승진 및 급여 상승의 이유로 이직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음
- 따라서 전문 분야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직 시 경력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음
- 직원 채용의 방법은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등재하거나, 인력 채용 에이전트를 이용하거나, 인력채용 잡지에 광고하는 것임

2) 계약관리

- 홍콩은 영미 방식을 따르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근무시간, 수습기간, 휴가, 병가, 보너스, 급여, 급여일, 계약 파기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에 근거하여 판단하므로 계약 조건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3) 휴가제도

- 일반적 연차는 연간 10일에서 20일 사이이며 법적으로 지정된 최소 연차는

44) 한-홍콩 CDTA협정은 2014년 8월에 체결되었지만 현재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7일임

- 회사에 따라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는 각각 다르며, 유급 휴가는 기본 급여는 지급되나 일부 수당(예: 식 비) 등은 공제되는 경우도 있음
- 홍콩의 유급 휴가 제도는 근무 근속에 따른 누진 방식이 적용됨

구분/ 근속연수	1	2	3	4	5	6	7	8	9
연간 유급휴가(일)	7	7	8	9	10	11	12	13	14

출처: 홍콩 노공처⁴⁵⁾(勞工處)

4) 종업원 복지보험

□ 의무보험

- 퇴직보험(Retirement Scheme)은 매달 종업원 급여의 일정액(약 5%)을 종업원 및 회사에서 보험사에 적립
- 회사 퇴직 시 또는 사직 시 근속연수에 따라 회사적립금을 차등 지급받음으로써 직원의 퇴직 후 보장과 장기근속 보장함
- 단체상해/생명보험(Group Personal Accident/Life Insurance) 단체 상해보험은 고용인의 각종 상해/사망 사고에 대한 보험임

□ 비의무보험

- 단체의료보험(Group Medical Insurance)은 고용인의 질병에 대한 병원 입원치료비 및 통원치료비를 보상해 줌
- 한국과는 달리 개인보험회사가 보험인수를 하고 있으며, 회사마다 보상내용이 상이하며 보상 내용에 따라 보험료도 차이가 남
 - 홍콩은 한국에 비해 의료수가가 비싼 편으로 한국주재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간 보험료가 1만 5,000홍콩달러에서 2만 2,000홍콩달러 정도임
 - 한국과 달리 출산관련 경비 및 치과치료 경비는 높은 의료수가 때문에 일반 의료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음 (특약으로 가능)

45) 노공처: 인적자원관련 제도의 제정과 실시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한국 노동청과 비슷함

5) 급여기준

- 홍콩에서는 급여의 편차가 상당히 큰 편임
 - 초과근무수당은 회사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근로자들은 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서에 초과근무 수당을 언급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 2014년 3분기 통계에 따르면 직종별 월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직업군은 금융 및 보험 분야 임

표 36 홍콩 업종별 급여현황(2014년 9월 기준)

(단위: \$HK)

주요산업	월평균급여
제조	13,351
수출입 및 도소매	16,828
운송	18,116
숙박 및 요식업	12,826
금융 및 보험	20,507
부동산 임대, 보수 및 관리	12,195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10,170
개인서비스	15,945
전체	14,354

출처: 홍콩 통계서

6) 해고절차와 조건

- 고용 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갱신이 없는 경우 동 조건의 연장 이행으로 판단됨
 - 기본적으로 홍콩인들의 이직은 매우 잦은 편으로 피고용인들의 자발적 이직이 대부분임
- 특별한 하자 등이 생겼을 경우의 해고는 고용주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나 피고용인이 이에 반발할 경우는 노사심재처의 심의를 거치게 됨

표 37 해고와 수당지급 기준

구분		계약기간 명시여부	공지 기간	수당
수습기간	한달 이전	계약서 명시 무관	즉시	없음
	한달 후	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동의하에 7일전	근무일까지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7일전	근무일까지
수습기간 종료후	계약을 명시한 경우		동의하에 7일전	근무일까지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한달 전	1개월

출처: 홍콩 노공처

7) 퇴직금

- 2년 이상 연속 계약 근무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8) 노조 활동 보장

- 홍콩에서는 노조의 활동은 법률로 보호되고 있음
 - 노사심재처는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분규를 심의·재판하는 기능을 가짐
- 홍콩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약 61%이나, 홍콩인들은 파업이 경제에 손실을 입힌다는 부정적 관념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들은 장기파업 및 시위 등의 과격한 노동쟁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현실적으로 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쟁의 역시 실질적 효력(bargaining power)이 적다고 판단되고 있음

5-6. 지적재산권

- 지식재산권의 보호영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서비스 상표권, 저작권, 공업설계권, 집적회로설계, 영업비밀과 바이오 관련 기술, 원산지 명칭 및 확정에 관한 지식재산권 등임
 - 홍콩 지식재산권 등록은 상표, 디자인, 특허로 구분됨
- 홍콩에서 저작권은 상표, 특허, 설계 등과는 달리 창작되는 순간 별도의

등록 없이 그 재산권이 인정되는 관계로 지식산권서(知識產權署)내에 별도의 담당부서가 없음

- 전담부서로는 장관관청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률의 개정, 관리부여 또는 기타 홍보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며 일반 업무연락은 행정조(行政組)에서 담당함

6. 의료기관(법인) 설립

□ 민간 의료기관의 설립

- 홍콩의 보건·의료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성된 듀얼 트랙 체계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민간의료기관은 홍콩주민을 상대로 대부분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능력이 강한 홍콩주민에 대해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민영의료기관은 사가의원[私家醫院], 주간의료센터와 클리닉으로 분리됨
- 개방적인 투자정책으로 외국투자 의료기관설립에서도 반영되고 있지만 홍콩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설립제한이 비교적 큼
- 외국투자자 및 본토투자자에 대하여 별다른 구분을 하지 않기에 모두 “의원⁴⁶⁾, 호양원⁴⁷⁾ 및 유산원⁴⁸⁾ 등록조례⁴⁹⁾(Hospitals, Nursing Homes and Maternity Homes Registration Ordinance (Cap. 165))”에 따라 설립되고 있음⁵⁰⁾
 - 의료기관 설립은 홍콩정부의 인허가하에 설립되며 신청 설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신청서에 반드시 설립예정 의료기관의 개요(명칭, 주소, 유형, 인력수급계획), 설립신청인 혹은 신청기업의 개요를 명확히 기재하여 홍콩위생서 의료기관등록관련 부서에 제출함
 - 신청서류 외에 신청인/기업의 신분증명 자료, 의료기관 시설 설계도, 기획서 및 신청비용을 함께 제출함
- 홍콩 위생서 서장은 해당신청에 대하여 심사 후 통과여부를 결정하며 통과할시 증명서를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1년(매년 12월에 갱신 必)임
 - 심사 후 통과되지 못하면 신청인은 홍콩행정장과 행정회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의 경영에 있어 법규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위생서 서장은 자신의 권한에 의거하여 수시로 의료기관의 의료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46) 의원[醫院]: 병원을 가리킴

47) 호양원[護養院]: 요양원과 유사한 의료기관 임

48) 유산원[留產院]: 산부인과와 유사한 의료기관 임

49) Hospitals, Nursing Homes and Maternity Homes Registration Ordinance (Cap. 165)

50) 공립병원, 군병원, 대학병원은 별도의 설립절차를 거치고 있음

□ 민간 의료기관의 현황

- 보건의료체계의 구성부분인 민영의원은 2014년까지 11개 설립되었고 4,000여개의 병상을 제공하고 있음
 - 주로 부유계층과 개인의료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운영되고 있음
 - 홍콩 전체 병상사용수의 10%, 총 입원환자수의 20%를 차지함
- 홍콩정부는 병원환경과 서비스수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민간의료기관은 “사가의원, 호양원 및 유산원 실무조례⁵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 “실무조례”는 의료기관의 조직구성, 시설관리, 인적자원관리, 서비스관리 등 4개의 큰 범위에서 총적인 방침을 규정하였고 환자관리, 안전관리, 의료기록 등등의 구체적인 요구도 규정하고 있음

□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이슈⁵²⁾

- 보건의료기관설립에 대한 법규와 규칙이 비교적 완벽하고 투명도가 높기에 설립 시의 애로사항은 적으나 본격적인 운영에 개입되면서 많은 의무를 감당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의료기관 운영투명도를 높이려는 홍콩정부의 결심으로 의료기관의 독립경영권에 많은 제한을 가져다 줌
 - 1)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정부에게 모든 의료서비스의 수가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부는 이를 홍콩주민에게 공시하며 공시 된 의료수가는 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
 - 2) 홍콩주민의 자주 걸리는 질환에 대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패키지화하여 할인된 수가를 제공하여야함
 - 구체적인 요구는 없으나 30%정도의 할인으로 간주되고 있음
 - 3) 의료서비스의 품질보증을 위해 연단위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운영 개시 48개월 내에 병원인증을 달성해야 함
- 전반적으로 민영병원으로 설립되었으나 각항 규정으로 인해 공립병원에

51) Code of Practice For Private Hospitals, Nursing Homes and Maternity Homes

52) 사가의원관리현황보고서, 홍콩 식품 및 위생국, 2014.06

가까운 역할을 감당해야함⁵³⁾

- 1) 토지매입 후 60개월 안에 개원해야하고 병상은 300병상, 진료과목은 일반의학, 일반외과, 정형외과, 외상과 및 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함
- 2) 입원환자 중 적어도 50%가 지역 환자여야 하고 70%까지 비중을 높일 경우 가중 점수를 받음

7. 외국인 진료 및 허용범위

- 홍콩 의사면허는 Medical Council of Hong Kong이 관리하고 있으며 클리닉 개업 시 일반 병원의 경우 의료면허는 필요하지 않지만, 수술을 필요로 하는 병원의 경우 본 기관에서 취득한 면허를 필요로 함
 - 외국인에 대한 수술 허가는 의과 대학이나 공립 병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급되고 있음
 - 따라서 수술을 포함하는 병원 개업 시 현지 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

53) 홍콩 정부 '러브콜' 한국 병원들 '냉담', 데일리 메디, 2012. 05

8. 홍콩 주요 민영병원

- 사가병원[私家醫院]이라고도 불리는 민영병원은 홍콩위생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의원, 호양원 및 유산원 등록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민영병원은 기존 11개⁵⁴⁾와 2017년에 설립예정인 병원이 1개 있음
 - 기존 11개 병원은 종교병원이 8개, 홍콩 부동산 기업 산하 병원 1개 및 홍콩주민이 설립한 병원 2개로 구성됨
 - 설립예정인 병원은 Parkway Pantai Limited기업 산하의 병원으로 IHH그룹 (IHH Healthcare Berhad Group)에 소속되어 있음

□ Canossa Hospital

- 1929년, Canossian Daughters of Charity(애덕의 딸 카노사 수녀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1991년에 Caritas Hong Kong으로 소속된 천주교병원임
- 병원부지면적은 6,500m²이며 160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 주소: 1 Old Peak Road, Hong Kong

□ St. Paul's Hospital

- 프랑스 Sisters of St. Paul de Chartres(샤르뜨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설립한 천주교병원으로 1898년부터 홍콩주민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현재 400여 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20여개의 진료과목을 개설함
 - 주소: 2 Eastern Hospital Road, Causeway Bay, Hong Kong

□ St. Teresa's Hospital

- 프랑스 Sisters of St. Paul de Chartres(샤르뜨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1940년에 설립한 천주교병원임
- 현재 700여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54) 민영병원 리스트, 홍콩정부 위생서 홈페이지 <http://www.dh.gov.hk/>

- 주소: 327 Prince Edward Road, Kowloon

□ **Evangel Hospital**

- 1965년, 중국 Evangelical Free Church(복음주의 자유교회)와 미국 Evangelical Free Church에서 공동으로 홍콩에 설립한 기독교병원임
- Evangel Hospital은 특히 1차 진료(Primary care) 분야에서 강점을 보임
- 현재 6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 주소: 222 Argyle Street, Kowloon

□ **Hong Kong Adventist Hospital – Stubbs Road**

- 60년대 미국의사가 여러 사회 층의 지지로 Sevenday-Adventist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명의로 설립한 기독교병원임
- 현재 본원 102병상 분원 80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 주소: 40 Stubbs Road, Hong Kong

□ **Hong Kong Adventist Hospital – Tsuen Wan**

- 1964년에 설립되었고 Sevenday-Adventist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산하의 기독교병원임
- 구역 내 유일한 비영리병원으로 현재 133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 주소: 199 Tsuen King Circuit, Tsuen Wan, New Territories

□ **Hong Kong Baptist Hospital**

- 1963년, Baptist Convention of Hong Kong(침례교)에서 설립한 기독교병원임
- 현재 800여 병상과 2,200여 명의 직원이 있음
- 주소: 222 Waterloo Road, Kowloon Tong, Kowloon

□ Precious Blood Hospital

- 1937년, Canossian Daughters of Charity(애덕의 딸 카노사 수녀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1991년에 Caritas Hong Kong으로 소속 된 천주교병원임
- 현재 180여 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20여개의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 주소: 113 Castle Peak Road, Sham Shui Po, Kowloon

□ Union Hospital

- 1994년 홍콩 부동산 그룹 Henderson Land Development Company Limited가 설립한 영리성 민영의료기관임
- 현재 300여 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2015년에 시작 된 확장공사가 마무리 되면 580병상으로 확충됨
 - 주소: 327 Prince Edward Road, Kowloon

□ Hong Kong Sanatorium & Hospital

- 1922년, 홍콩의 의료인과 유명인사들의 공동한 염원으로 설립된 영리성 민영의료기관으로 1926년에 Dr. Li Shu Fen의 노력으로 병원으로 승격됨
- 현재 500여 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30여개의 진료과목을 개설함
 - 주소: No. 2 Village Road, Happy Valley, Hong Kong

□ Matilda & War Memorial Hospital

- 1907년, 영국계 홍콩상인 Granville Sharp가 사별한 처 Matilda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성 민영병원임
- 현재 100여 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중증치료과 및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함
 - 주소: 41 Mount Kellett Road, The Peak, Hong Kong

□ Gleneagles Hong Kong Hospital

- 홍콩의 유일한 외상 합작투자(Joint Venture) 병원으로 2017년에 운영예정임
 - Parkway Patai Limited(60%)와 Media Year Investments Limited⁵⁵⁾(40%)의 합자로 설립되며 홍콩대학이가성⁵⁶⁾의학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임
- 투자규모는 50억 홍콩달러(7,500만 KRW)이며 부지면적 46,750m² 이미 확보하였고 15개 이상의 진료과목 및 500병상을 운영할 예정임
 - 주소: Wong Chuk Hang

55) Media Year Investments Limited: NWS Holdings Limited 그룹산하의 투자기관이며 해당 그룹은 인프라건설이 주요업무이며 금융, 보험, 건축등 영역에도 진출하여 있음

56) 이가성[李嘉誠]: 홍콩대학에서는 화인갑부 이가성의 의학원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자 2006년에 명칭을 변경함